

<2009 행정학 공동학술대회>

2009년 한국치안행정학회 하계학술세미나

# 한국치안정책의 방향

■ 일시 : 2009년 6월 26일 금요일 12:30~18:00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대학원동)

 **KAPSA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초청의 말씀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초록이 짙어져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을 맞이하여 ‘2009 하계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는 1956년 창립되어 우리나라행정에 있어서 방향타의 역할로 행정학계 최고권위의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열어서 학문적 교류와 이해를 깊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아름다운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 장을 마련하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치안행정학회는 2004년에 치안행정의 이론과 실제의 심오한 연구와 활동으로 한국치안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로 창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관련 학문분야는 물론 인접학문분야 등의 영역에서 관·산·학계 전문인들이 참여하여 매년 매분기마다 학술대회 열렸고, 그 결실을 성실히 모아 「한국치안행정논집」을 발행해 왔습니다. 이에 한층 더 뜻 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학회지인 「한국치안행정논집」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되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배전의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금번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치안정책의 방향**」을 대주제로하여 제1주제의 사법부검제도, 제2주제의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제3주제로 공경호제도 및 제4주제로 민간경비의 역할 등 4개의 주제로 치안행정의 다채로운 세부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뜻 깊은 자리에 한국치안행정학회 회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치안행정의 심도있는 고견들을 논의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9 행정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한국행정학회 이대회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모든 학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단국대학교 장호성총장님과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한국치안행정학회장 배철호

## <학술세미나 일정>

전체사회 : 김태민(총무위원장/경운대)

■ 등록 13:30~

제1부 14:00~

국민의례

개회사 배철효(한국치안행정학회장)

제2부 14:30~

① 제1주제(사회 : 이영남, 관동대)

- 발표 : 박동균(대구한의대)/최무찬(경산경찰서 과장)  
한국 사법부검제도의 개선방안
- 토론 : 조동운(대전지방경찰청), 박준석(용인대)

① 제2주제(사회 : 이영남, 관동대)

- 발표 : Cho, Yeok-il(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Service-Oriented Policyming Strategy among Korea American  
Juveniles
- 토론 : 박용수(창신대), 정덕영(경동대)

① 제3주제(사회 : 이상철, 용인대)

- 발표 : 임준태(동국대)  
각국 공경호제도의 비교연구
- 토론 : 박해룡(경일대), 박형규(오산대)

① 제4주제(사회 : 이상철, 용인대)

- 발표 : 공배완(경남대)  
범죄예방에 대한 민간경비의 역할 - 한계점과 개선책
- 토론 : 김성우(영남이공대), 민재기(평택국제대),

제3부 17:30~ 만찬

# 목 차

## 제1주제

- 한국 사법부검제도의 개선방안 / 박동균(대구한의대), 최무찬(경산경찰서)  
..... 3

## 제2주제

-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among Korea American Juveniles /  
Yeok-il Cho(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Cary Adkinson(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 23

## 제3주제

- 각국 공경호제도의 비교연구 / 임준태(동국대)  
..... 41

## 제4주제

- 범죄예방에 대한 민간경비의 역할 - 한계점과 개선책 / 공배완(경남대)  
..... 63



# 제 1 주 제

# 한국 사법부검 제도의 개선방안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최무찬(경산경찰서경무과장)

## <목 차>

I. 서론	IV. 사법부검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III. 주요 국가의 사법부검제도	참고문헌

## I. 서론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살인 및 자살로 인해 사망한 건수는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살인 및 자살로 인해서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을 밝혀 내는 작업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치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이다. 국가는 사망에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는지를 가려내어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이 바로 부검이다.

부검은 사망자의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는 국가적인 배려와 노력이며, 변사체의 사인을 가장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사망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일선 국가기관이 수사경찰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현행 사법부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경북지역의 P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중 현재 수사업무에 종사중인 수사경찰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분석한 이유는 부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생한 실무경험을 기초로 한 수사경찰관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설문지는 2008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91부를 배포하여 최종 73부를 회수하였으며, 문항별로 응답률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답변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법을 실시하였으며,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직 수사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함

\* 본 연구는 2008년 12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게재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으로써 표준화된 설문지 조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북지역의 P 경찰서에 근무하는 수사경찰관만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한국의 전체 수사경찰관들의 전체 견해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 II. 이론적 배경

부검(剖檢, autopsy)은 “스스로 보기 위하여(to see for oneself)”라는 뜻이다. 이것에 관한 가장 최초의 기록 가운데 하나는 기원전 44년 Julius Caesar에 대해서 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다(임준태, 2007).

부검은 의사에 의해 수천 년 전부터 이행되어 왔으며, 1247년에 중국 송나라 宋慈가 쓴 洗冤錄(Hsi Yuan Lu)은 모두 5권이며 53항목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외상의 형태와 남겨진 상처로부터 무기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익사하거나 화재로 사망한 경우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하여 묘사하였으며, 1858년 Rudolf Virchow의 「Cellular pathology」에서 신체조직의 질병에 대하여 현미경 조사를 추가하여 현대 부검방법의 계기가 되었다(K. Iverson, 2001).

### 1. 부검(剖檢, autopsy)의 개념과 목적

부검은 검시(檢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변사체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체의 손괴 없이 시행되는 시체검사행위인 검안(檢案)만으로는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을 절개·채취하는 등 시체를 손괴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검시(檢視)는 검시(檢屍)를 포함하면서 시체와 주변 현장에 대한 조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황적준, 2003). 즉 부검이란 국민의 죽음에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는 국가적인 배려와 노력이며,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죽음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범죄로 인한 사체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것은 진범을 체포하는데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되어 범인을 체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 2. 부검(剖檢, autopsy)의 분류

부검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병리부검(病理剖檢)

질병에 의한 사망이 확실하나 사인이 애매한 경우, 부검을 통하여 사인을 밝히며 이를 토대로 질병의 원인, 경과, 치료효과의 규명 등 의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검시(檢視)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부검(行政剖檢)

행정법규(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부검으로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나 사인 불명 또는 사망의 종류가 불확실한 사체에 대한 부검으로 공공의 이익에 그 목적이 있다.

3) 사법부검(司法剖檢)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변사체에 대한 부검으로 범의부검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결국 범죄와 사인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사법작용의 공정한 운영에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3. 사법부검의 법률적 근거

현행 우리나라 사법부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이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에서 공판절차에서의 부검에 관한 규정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수색·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인 사법부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 (1) 살인, 강도살인(강도치사), 상해·폭행치사, 강간살인(강간치사), 방화치사 등 중요 강력사건에 기인한 변사사건
- (2) 범죄에 기인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인불명 등 부검의 필요가 있는 변사사건
- (3) 유족이 사인을 다투는 사건
- (4) 사회의 이목을 끄는 변사사건 또는 중요인사에 대한 변사사건

2) 처리 요령

- (1) 보고 및 지휘: 변사자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경찰서장에게 변사사건 발생을 보고하고, 경찰서에서는 검사에게 발생 및 지휘건의를 하고 지휘를 받도록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2조 제1,2항).
- (2) 검시: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는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여 검시를 행하고(범죄수사규칙 제53조 제2항),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의사 등의 참여: 전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사를 참여하게 하는 외에 검시에 지장이 없는 한 변사자의 가족, 친족, 동거인, 구시군의 공무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4) 검증: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영장을 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 기타 적당한 감정인에게 사체의 부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6조 제2항).
- (5) 사체 등의 인도: 검시, 부검 등 조사가 끝난 사체 및 소지금품은 발생 신고 접수 24시간 이내에 그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6) 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등을 실시하여 사후에 수사 또는 신원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Ⅲ. 주요 국가의 사범부검제도

#### 1. 영미법계 국가의 부검제도

##### 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부검제도

영미법계 국가의 검시제도인 검시관 제도는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기원한다. 초기의 검시관 제도는 1066년 노르만의 영국정복 직후인 11세기경에 시작되었고, 웨일즈는 1282년 영국제도를 도입하였다(하태훈, 2006 : 511).

##### (1) 부검의 결정

검시관(檢屍官)<sup>2)</sup>은 사인을 알지 못하고 급사한 사망사건에 대한 ‘검안승인절차’(Inquest)<sup>3)</sup>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검안승인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부검을 명할 수 있으며, 검시관법에 의하여 누구에게도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죽음을 조사할 수 있다(Elizabeth Hodder 등, 2003:153).

##### (2) 부검의 시행

부검은 적정한 자질과 경험, 부검시설을 갖춘 병리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검인 경우 각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나 사범부검의 경험이 풍부한 내무부소속 법의병리의사(Pathologist of Home Affairs)에게 의뢰하여 부검을 실시한다(Janet Smith, 2003:221. 황적준, 2003: 11-13).

##### (3) 유족 등의 보호

이해관계인(Certain interests)<sup>4)</sup>에게 부검의 시간과 장소가 통지되어야 하며, 유족이 부검 절차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유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유족들이 의사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의심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해 병리의사는 부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검시관은 죽음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국가의 사범공무원으로 일부는 의사이나 대부분 변호사이며 지방정부가 임명한다.

3) 검시관이 사망사건의 관련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망인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범 절차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으로 사망사건의 약13%가 이에 해당한다.

4) 일반개업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의 경우 당해 병원, 부검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족 등이 관계인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부검절차를 관장하는 법은 Coroners Act 1988의 Section 10, 20이다.

2) 미국의 부검제도 - Maryland 주를 중심으로-

미국은 대륙에 이주하기 시작했던 1600년 초부터 영구의 검시관 제도를 자연스럽게 도입하였다(하태훈, 2006 : 513).

미국에서 사망사건 조사절차를 담당하는 시스템은 각 주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Maryland 주를 포함하여 법의관(法醫官) 제도를 가지고, 위 조사절차를 담당하는 22개 주가 있는 반면 잉글랜드의 검시관 제도를 고수하는 11개 주도 있고, 위 양자를 혼합한 시스템을 실시하는 17개 주도 있다(황적준, 2003:13-14).

Maryland 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검업무는 OCME<sup>5)</sup>에서 실시한다(Janet Smith, 2003: 472-478).

(1) 부검의 결정

사망사건의 경우 법의조사관<sup>6)</sup>이 현장에 임장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법의관<sup>7)</sup>은 사인을 증명하거나 부검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 부검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우선적으로 법의관에게 있으며, 법의관은 사건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시체를 검사하여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된다(황적준, 2003 : 15).

(2) 부검의 시행

부검을 실시하기 전에 병리의사 등이 망인의 병력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토론을 하며, 부검을 통하여 발견한 사항들이 Staff 전체에게 제시되고 이들은 사망원인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이 경우 부검은 법의관 주도로 강력팀 형사와 경찰 증거수집반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효율적인 부검업무 수행을 위해서 부검 대신 혈액을 채취하여 보관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한적 부검은 거의 실시되지 아니한다(이성식, 2005: 94).

(3) 유족 등의 보호

망인의 유가족들도 부검을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때 부검을 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검을 피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진다. 만약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검이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 유족들은 판사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

5) 수석법의관 중앙사무소(Office of the Chief Medical Examiner)에서는 ① 수석법의관 ② 비전임으로 근무하는 부 법의관 2명 ③ 7인의 법의관보 ④ 10인의 법의 병리의사 ⑤ 14인의 전임 조사관 ⑥ 이들의 지원하는 staff들로 구성되어 있다.  
 6) 법의조사관(medical examiner investigator)은 수사기관이나 간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6월 내지 1년의 법의학 훈련을 거쳐 임명된다.  
 7) 미국에서 발달한 법의관(medical examiner) 제도는 변사사건의 1차 담당자를 의사인 법의관으로 정하고 법의관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는 의과대학 졸업 후 6-7년 동안 전공수련을 받은 검시전문의를 요구하고 있다.

있고,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이성식, 2005: 93).

(4) 부검의 요청 등

유가족들도 부검을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윤성철, 2004 : 39).

3) 호주의 부검제도(Janet Smith, 2003: 459-464)

호주의 법의학고수이자 victorian 법의학연구소장인 Stephen Cordner 박사가 Victoria주의 Corona System을 설명한 Janet Smith(2003)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호주는 영연방국가로 잉글랜드의 검시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위 제도를 발전적으로 승계하여 구체적인 태양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1985년의 Coroner법이 수정되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1) 부검의 결정

사망사건이 보고되면 경찰이 조사를 실시하며, 사체에 대한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는 검시관이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2) 부검의 시행

부검의 시행은 병리의사에 의한다. 부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병리의사는 시체의 외관을 검안할 권리와 사망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경찰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3) 피해자 등의 보호

검시관은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유족들이 당해 결정에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된다. 유족들은 부검의 결정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망인에 대한 자료에 접근할 권리도 있다. 검시관의 결정에 대하여 유족은 Victoria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4) 부검의 요청 등

병리의사는 자신의 판단으로 부검이 요구되는지, 아니면 사체의 손상 없이 사인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5) 근거 법령

1985년의 Coroner법이 수정되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동법은 수석검시관 사무소(Office of State Coroner)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고 검시관에게 보고하여야할 사망사건의 종류도 규정하고 있으며, 검시관이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검안승인절차를 개시할 때 필요한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 2. 대륙법계 국가의 부검제도

대륙법 국가는 대체로 검시를 전담하는 직책인을 따로 두지 않고, 다른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검시의 책임을 겸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이 검시의 일차적인 주체이다(하태훈, 2006 : 516).

1) 핀란드의 부검제도(Janet Smith, 2003: 478-482)

핀란드는 미국과 같은 법의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과대학과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의사 또는 경찰관에게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 중 일정한 경우 경찰이 조사를 할 수도 있다.

(1) 부검의 결정

경찰은 범죄, 사고, 자살, 독극물, 직업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질병 이외의 사망사건과 지병이 있을 때 의사가 진찰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하여 조사할 법상 의무가 있다.

경찰은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과정의 일환으로 법의병리학자에게 검안 또는 부검을 지시할 수 있다. 부검을 명하는지 여부는 경찰이 결정하지만, 부검여부에 대한 결론에 이르기 전에 병리의사의 지도를 받는다.

(2) 부검의 시행

병리의사가 사망의 원인과 종류를 검안과 경찰기록 망인의 의학기록을 기초로 하여 증명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병리의사는 전체부검(full autopsy)을 행하며, 독극물검사는 일반적으로 부검 후 결정한다.

(3) 유족 등의 보호

유족은 경찰의 범의부검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2) 스코틀랜드의 부검제도(Janet Smith, 2003: 482-486)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시관제도가 아닌 스코틀랜드의 지방검사(procurator fiscal)가 검시의 책임을 지는 사법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검사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죽음을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 부검의 결정

사망사건은 통상 경찰이 예비조사를 거치며, 경찰의 보고서나 경찰자문의 또는 법의학자가 검안하여 작성한 부검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 망인의 의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검사가 부검을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2) 부검의 시행

부검은 검사의 부검결정에 의하여 법의병리 전문의가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 또는 병리학교실에서 시행한다. 검사는 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직검사나 독극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유족 등의 보호

유족들은 부검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부검결정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검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나 유족이 요구하거나 직장이나 교도소에서 사망한 경우 판사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검한다. 또한, 검사의 부검결정에 대하여 ‘검안승인절차’<sup>8)</sup>에 의하여 부검을 시행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8) 부검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병리의사가 시체의 외관을 검사한 후에 사망의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

경우도 있다.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부검은 2인의 병리의사가 수행하며, Edinburgh 지역에서는 모든 사안에서 전체적인 부검을 수행하고 실무상 ‘검안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3) 일본의 부검제도

일본의 검시제도는 검안 및 행정해부를 주로 하는 감찰의무원과 사법해부를 주로 하는 대학의 법의학고실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일본에는 대체로 각 도 또는 시에 감찰의무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찰의(監察醫)<sup>9)</sup>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서장, 보건소장이 사인이 불명한 시체를 발견하여 감찰의무원에 통지하였을 경우나 기타 사망사건 발생 신고가 감찰의무원에 접수된 경우, 감찰의무원(監察醫務院)에서 감찰의를 사망현장에 파견하여 시체를 검안(檢案)하여 범죄와 관련된 사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부검의 결정

범죄와 관련 있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검찰의는 검찰관의 부검결정에 조언할 수는 있으나 종국적인 부검 결정권은 검찰관(檢察官)에게 있다(문국진·우에노마사히코, 2003: 124).

1959년 9월부터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본부에 형사조사관 (또는 검시관리관)을 배치하여 변사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를 받고, 필요에 따라 의사의 검안에 입회하며, (사법)부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윤성철, 2004: 59).

한편, 변사체 혹은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검시가 없으면 감찰의가 검안 또는 부검할 수 없고 감찰의의 부검은 형사소송법상의 검증, 감정을 위한 부검업무를 방해하지 못한다(시체해부보존법, §8①).

(2) 부검의 시행

사법부검 대상인 시체는 감찰의무원에서 부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대 ‘법의학고실’로 송부되어 이곳에서 의과대학 법의학교수가 부검한다(문국진·우에노마사히코, 2003: 117).

(3) 유족 등의 보호

행정부검의 경우 유족의 승낙이 필요하나 사법부검은 유족의 승낙은 필요 없다(시체해부보존법, §7③).

###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망사건의 유족보호를 위하여 부검의 결정에 앞서 유족의 의견을 듣고, 부검의 결정에 대하여 유족들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부검을 하지 않을 결정에 대한 유족의 의견수렴과 유족의 부검 반대의견에도 부검을

의학적 사망원인 증명서를 발부하는 제도.

9) 법의학을 전공한 의사로 주로 행정부검을 담당한다.

결정한 경우의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등 유족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부검의 신중한 결정과 합리적인 부검업무를 위하여 병리의가가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검사의 부검결정에 대하여 법의학자가 검안승인절차를 통하여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부검을 하지 않으므로 부검업무를 부담을 줄이는 등 각국의 풍습과 국민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건에 있어서 검사부검지휘사건 3,300건 중 4건만이 범죄의 발견과 연결된다<sup>10)</sup>. 또한, 사인(死因)의 규명에만 치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부검의 현실을 살펴 볼 때 부검의 필요성, 유족의 보호, 부검절차의 신속성, 부검의 적정성확보 등을 위한 보완책이 요청된다.

#### IV. 사법부검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분석

본 연구에서는 P 경찰서의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위이하 전 계급으로, '경사'가 52.1%로 가장 많았고, 재직 기간은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69.9%로 가장 많았으며, 부검의 참여회수는 '10회 이내'가 34.2%, '10-50회'가 28.8%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표 1 〉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 분	범 주	빈 도(단위 :명, %)
계 급	순 경	3(4.1)
	경 장	22(30.1)
	경 사	38(52.1)
	경 위	10(13.7)
재 직 기 간	1년 이내	2(2.7)
	2-3년	0(0)
	3-5년	3(4.1)
	5-10년	17(23.3)
	10년 이상	51(69.9)
부 검 참 여 회 수	참여 경험 없음	14(19.2)
	10회 이내	25(34.2)
	10-50회	21(28.8)
	50-100회	7(9.6)
	100회 이상	6(8.2)

10) 2004년 국정감사보고서, 2005 : 9.

근 무 처	수사지원팀	3(4.1)
	강 력 팀	27(37.0)
	과학수사팀	5(6.8)
	지능경제팀	20(27.4)
	기 타	18(24.7)
합계		73명

### 1. 부검의 필요성에 관한 수사경찰의 인식

#### 1)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수사경찰은 부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 한 결과는 <표 2>와 같은데, ‘반드시 필요’가 1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5.1%, ‘필요한 편이다’가 2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4%, ‘보통이다’가 13명(19.7%), ‘필요한 때가 있다’가 18명(29.7%), ‘필요 없다’가 1명(1.5%)으로 부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동의 하고 있었다.

< 표 2 > 부검의 필요성 여부

구 분	빈 도(명)	비 율(%)
반드시 필요	10	15.1
필요한 편	29	44.0
보통이다	13	19.7
필요한 때가 있다	18	29.7
필요 없다	1	1.5
합 계	71	110

#### 2) 부검결정에 대한 유족의 찬반 정도

수사기관의 부검결정에 대한 유족의 찬반 정도를 질문한 결과는 ‘매우 찬성’이 0명, ‘어쩔 수 없어서 찬성’이 3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9.3%, ‘별다른 의견 없음’이 2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4.8%, ‘반대’가 8명(11.6%), ‘매우 반대’가 3명(4.3%)으로 나타나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대부분 부검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 부검에 대한 유족의 찬반 정도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찬성한다	0	0
어쩔 수 없어서 찬성한다	34	49.3
별다른 의견 없음	24	34.8
반대한다	8	11.6
매우 반대한다	3	4.3
합 계	69	100

3) 검사의 부검지휘에 대한 유족의 반대로 인한 검안  
 검사의 부검지휘에 대하여 유족의 반대로 검안으로 대처한 경우가 몇 %가 되는지? 질문한 결과 자신이 경험한 부검처리 건수의 '1% 이하'가 2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5.8%, '1-2%'가 1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3.9%, '2-3%'가 15명(22.4%), '3-4%'가 4명(5.8%), '5% 이상'이 8명(12.1%)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수사경찰이 검사의 부검결정에 대하여 유족들의 부검반대로 취소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유족의 반대로 검안으로 대처한 경우

구 분	빈 도(명)	비 율(%)
1% 이하	24	35.8
1-2%	16	23.9
2-3%	15	22.4
3-4%	4	5.8
5% 이상	8	12.1
합 계	67	100

## 2. 유족의 보호측면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 1) 부검 시 유족의 수치심 유발

현재 각 부검실에서의 부검은 부검의사 1-2인, 수사종사자 약간 명(사진촬영, 기록요원, 감정물 정리요원, 검시지휘자 등), 부검실 관리원, 경우에 따라서 부검 실습자 다수 등이 부검을 참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체는 완전한 나체 상태로 각종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족이 수치심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즉, '매우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가 5명으로 6.9%,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가 2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7.2%, '보통이다'가 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6.2%, '느끼지 않을 것이다'가 6명(8.3%),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다'가 1명(1.4%)으로 나타나 부검시 유족들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부검으로 인한 유족의 수치심 유발 여부

구 분	빈 도(명)	비율(%)
매우 수치심을 느낄 것	5	6.9
수치심을 느낄 것	29	47.2
보통이다	26	36.2
느끼지 않을 것	6	8.3
전혀 느끼지 않을 것	1	1.4
합계	67	100

2) 유족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부검 당시 유족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는 ‘생식기 , 유방 등 완전노출 상태’로 부검하는 경우가 3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9.2%, ‘부검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가 9명으로 14.8%, ‘질내 정액 채취 시 등’이 12명으로 응답자의 19.6%, ‘공개된 장소에서 부검’이 7명에 11.5%, ‘기타’가 3명에 4.9%로 나타나 생식기 등을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부검하는 경우 수치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유족의 수치심 유발요인

구 분	빈 도(명)	비 율(%)
생식기, 유방 등 완전노출	30	49.2
참여인원이 너무 많다	9	14.8
질내 정액 등 채취 시	12	19.6
공개된 장소	7	11.5
기 타	3	4.9
합 계	61	100

3) 부검에 있어서 변사자에 대한 예우

범죄수사규칙은 변사체를 처리함에 있어 사자에 대하여 예우를 잃지 않도록 정중하게 취급하고, 현장 보존시 깨끗한 백색 천으로 사체를 덮도록 하는 등 사자의 명예에 훼손이 없도록 하고 있다. 변사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정중하다’가 2명에 2.8%, ‘정중하다’가 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6.1%, ‘보통이다’가 4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8.3%, ‘무례하다’가 2명에 2.8%, ‘매우 무례하다’는 0명으로 사자에 대한 명예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 변사자에 대한 예의는 정중한가 ?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정중하다	2	2.8
정중하다	26	36.1
보통이다	42	58.3
무례하다	2	2.8
매우 무례하다	0	0
합계	72	100

4) 부검실의 환경

부검실의 환경은 유족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검실 환경의 쾌적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8〉 과 같이, ‘매우 쾌적하다’가 0명, ‘쾌적하다’가 2명에 2.8%, ‘보통이다’가 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6.1%, ‘열악하다’가 3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8.6%, ‘매우 열악하다’가 9명에 12.5%로 나타나 부검실의 환경은 아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 부검실의 환경에 대한 의견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쾌적하다	0	0
쾌적하다	2	2.8
보통이다	26	36.1
열악하다	35	48.6
매우 열악하다	9	12.5
합계	72	100

### 3. 부검 절차의 신속성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 1) 변사체 처리과정에서 유족의 경찰기관 출석 회수

사망사건의 유족은 장례를 신속히 치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족이 장례를 신속히 치를 수 있도록 유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줄여 주어 장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족이 변사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경찰관서에 몇 회나 출석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표 9〉와 같이 ‘1회’가 6명에 8.7%, ‘2회’가 3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6.4%, ‘3회’가 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6.2%, ‘4회’가 4명에 5.8%, ‘5회’가 2명에 2.9%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3회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9 〉 변사처리 시 유족의 수사기관 출석회수

구 분	빈 도(명)	비 율(%)
1 회	6	8.7
2 회	32	46.4
3 회	25	36.2
4 회	4	5.8
5회 이상	2	2.9
합 계	69	100

#### 2) 변사체 발견부터 부검종료 까지 소요 시간

형사소송법은 영장을 발부 받아야 부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검의 신속성을 저해하므로 영장이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고 부검요청서 내지 부검동의서 등의 별도형식을 통해 부검절차를 간소화하여 영장을 대신하는 제도 등도 논의되고 있다(곽순기, 2004 : 75). 변사체의 발견부터 유족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시간을 조사한 결과 ‘12시간 이내’가 4명에 5.7%, ‘24시간 이내’가 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7.1%, ‘36시간 이내’가 2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8.6%, ‘48시간 이내’가 10명에 14.3%, ‘48시간 이상’이 3명에 4.3%로 24시간 이상 소요가 57.2%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지연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 〉 변사처리의 평균소요 시간

구 분	빈 도(명)	비 율(%)
12시간 이내	4	5.7
24시간 이내	26	37.1
36시간 이내	27	38.6
48시간 이내	10	14.3
48시간 이상	3	4.3
합계	70	100

#### 4. 부검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 1) 신중한 부검결정을 위한 합동수사

우리나라는 부검률이 높지 않아 이것이 범의학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곽정식 외, 2002 : 5-6). 과도한 부검률은 비용의 증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유족의 피해로 이어지고(H. Elizabeth, 2003), 형식적인 사건 처리로 불필요한 부검이 발생하여 정작 필요한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부검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이 검사와 합동수사를 한 경우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반드시 합동수사를 실시한다’ 0명, ‘가급적 하는 편이다’가 8명으로 11.3 %, ‘보통이다’가 2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2%, ‘가급적 하지 않는 편이다’가 2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9.4%, ‘전혀 하지 않는다’가 1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1.1%로 나타나 검찰과의 합동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표 11 〉 검찰과 합동수사 사례

구 분	빈 도(명)	비 율(%)
반드시 합동수사	0	0
가급적 하는 편이다	8	11.3
보통이다	20	28.2
가급적 하지 않는 편이다	28	39.4
전혀 하지 않는다	15	21.1
합계	71	100

##### 2) 유족 등의 이의제기를 우려한 부검

우리나라에는 검시 대상범위를 명시한 법규가 없어 부검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적절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윤성철, 2005 : 122).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한 결과 부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하나, 막연히 타살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명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사체부검을 요구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부검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매우 많다’가 2명에 2.8%, ‘많은 편이다’가 6명에 8.3%, ‘보통이다’가 3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3.1%, ‘가끔 있다’가 3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1.7%, ‘전혀 없다’가 3명에 4.1%로 나타나 사법부검의 목적달성에 불필요한 부검이 상당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 〉 수사상 불필요한 부검 사례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많다	2	2.8
많은 편이다	6	8.3
보통이다	31	43.1
가끔 있다	30	41.7
전혀 없다	3	4.1
합계	72	100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을 밝혀 내는 작업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치국가  
가 이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이다. 국가는 사망에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는  
지를 가려내어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이 바로 부검이다. 부검은 국민의 사망에 인권  
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는 국가적인 배려와 노력이다.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사망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최일선 국가기관이 수사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경찰의 부검에 대한 인식분석’을 기초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부검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로서, 수사경찰은 부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  
지를 보이고 있으나, 유족의 경우는 부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검시결과와 상세한 설명과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검 전에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  
동으로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부검을 결정할 경우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변사처리 기록에 서면으로 작성, 첨부토록  
하여 절차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족의 보호문제로 망인에 대한 경외감이 존중되어야 한다. 부검시 유족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는 여성변사자의 경우 생식기, 유방 등을  
완전히 노출한 상태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내 정액 등을 채취하는 경우와 다수의 사람  
들이 견학을 하는 등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부검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능한 최소화하  
고, 여성변사자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는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가능토록 하여야 하고, 부검

실의 환경을 장례 예식장 수준으로 쾌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성 확보이다. 변사처리의 평균소요시간과 유족이 경찰기관에 출석하는 회수를 살펴보면, 시간은 24시간 이상이 62.2%, 출석은 3회 이상 출석이 45%로 나타나 대부분의 유족들이 장례절차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 유족은 신속한 장례를 치를 권리가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변사체 발견보고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사체를 부검한 후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기까지 24시간 내의 처리는 실무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토록 긴급압수·수색·검증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외상 등 범죄에 기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이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동의서’ 등을 징구한 후 영장 없이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의 적정성 확보이다. 부검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과도한 부검률은 형식적인 사건의 처리로 불필요한 부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용의 증가, 절차의 지연을 가져와 유족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신중한 부검의 결정이 필요하다. 경찰의 검시결과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부검지휘를 할 경우, 부검지휘에 앞서 과연 부검이 필요한지 현장에 입장하여 검사와 사경(司警)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신몽.(2005).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수사연구」, 23(8):44-46.
- \_\_\_\_\_.(2003). “미국의 검시제도”, 「수사연구」, 21(4):103-104.
- 강신욱.(2007).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경찰대학. (2002). 「경찰수사론
- 경찰청.(2006). 「경찰통계연보」
- 경찰청.(2007). 「경찰백서」
- 곽정식·채중민·최영석·한길로·이승덕·최상한.(2002).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법의학회」, 5-62.
- 곽순기.(2004).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문국진·우에노 마사히코.(2003).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 도서출판 해바라기.
- 박동균·최무찬(2008). 사법부검에 대한 수사경찰관들의 인식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8(12) : 256-263.
- 이성식.(2005).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재상.(2001). 「형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 임규옥.(2003).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임준태. (2007). 「법과학과 범죄수사」, 파주 : 21세기사.
- 윤성철, (2004). 「검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하태훈 .(2006).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18(2), 501-524.
- 윤성철.(2005). “검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 6:122.
- 황적준.(2003).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연구소.
- 대한민국정부.(2005). 200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법무부 소관).2005. 2.
- 대검찰청.(1981. 1991) 변사체처리 지침, 3. 대검예규 제 136호, 1981.7.1.
-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판결.
- Katherin Ramsland.(2001). *The Forensic Science of CSI*, New York : Berkley Boulevard Books.
- Houck, Max and Siegel, Jay A..(2006). *Fundamentals of Forensic Science*, Amsterdam ; Baton: Elsevier/ Academic Press.
- Iverson, K.(2001). *Death to dust: What happens to dead bodead ?* 2nd ed. Tucson, AZ: Galen Press, Ltd.
- Elizabeth Hodder 등.(2003). Death Certification and investigation in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 Report of Fundamental Review 2003*, 영국내무부(Home office).
- Janet Smith. (2003). *Death Certification and the Investigation of Death by Coroners. The Shipman Inquiry. Third Report*, 2003. 7. 14.





## 제2주제



#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among Korean American Juveniles

Yeok-il Cho<sup>1)</sup> · Cary Adkinson<sup>2)</sup>

<목 차>

I. Introduction	IV. Findings
II. Literature review	V. Conclusion
III. Methodology	REFERENCES

---

재미 한국인 지역공동체가 미국 형사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물이 거의 없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미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미국 남서부에서 가장 큰 카운티에 살고 있으며 한국인 목회자가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들의 나이는 13세에서 18세까지이다.

결과론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미국 경찰이 재미 한국인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 경찰활동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심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공감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상자들이 서비스 중심의 경찰활동 전략을 선호하는 데에 있어서, ‘사적 집단 안전감’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

---

1) Assistant Professor at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2) Assistant Professor at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 <Abstract>

There has been very few empirical research conducted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spite of its importance to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targets Korean American juveniles who are 13 to 18 years old and attend two largest Korean ethnic churches in the most populated county in a southwestern United States. The current study results in two observations. First, most of them agreed that the American police should act as public servants who take care of community problems. Second,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played the most determinant role in affecting their preference for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Based up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will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 I . Introduction

There has been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minority communities and the police for the last fifty years (Carter, 2002; Davis & Miller, 2002; Hunter, Barker, & Mayhall, 2004; Peak & Glensor, 2004; Shusta, Levine, Harris, & Wong, 2002). The police officers have been considered as enforcers of White-society rule, and the officers, conversely, have had prejudiced perceptions, which led them to believe that crime and minorities are closely related (Carter, 2002). Accordingly, those prejudiced perceptions have hindered the development of inventive ideas which could promote harmony within the American melting pot (Barlow & Barlow, 2000). A great number of minority people, to the contrary, seem to regard the police as a hostile target which limits their liberties (Peak & Glensor, 2004; Shusta et al., 2002). In addition, many race riots have taken place in major US cities, resulting in physical and economic damages to both ethnic commun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one of the minority communities, expanded its population size dramatically in recent decades. 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08a) reported that there were more than one million Korean Americans in 2000. However, their immigration history is very short. South Koreans have obtained legal permanent resident status since the 1940s. It was not until the 1965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which put an end to discriminatory immigration quotas based on national origin, that they were provided a better chance to have a life in the new country.<sup>3)</sup> They came to a promising land because they expected a high level of

---

3) Source: 2006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Persons obtaining legal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region and selected country of last residence: fiscal years 1820-2006. Retrieved August 30, 2008, from

living and better chance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Hurh, 1998).

Their immigration, however, has been a serious challenge for them as well as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s drastically different. Immigrant Koreans use English as a secondary language. Consequently, they have had communication problems with American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have been extremely unwilling to report to the police even when they are victimized (Hurh, 1998; Min, 1996; Park, 1997; Poole & Pogrebin, 1990). American law enforcement agencies, on the other hand, have rarely been aware of the needs and desire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other words, there has not been any true understanding between them.

Deficient exchange of ideas as well as misunderstanding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 groups have been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obstacles to improving friendly relationships (Nalla & Hummer, 1999). What is even worse is that there have been strong misunderstanding and ignorance regarding what kinds of policing strategies should be used. Shearer (1988) also contends that there would be disagreement with regards to the strategies betwee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and even within the law enforcement agency. Furthermore, discussions about the strategies have been regarded as the most essential influenc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and all debates about police organization and activity are said to start with this (Carter, 2002; Barlow & Barlow, 2000). As such, this study tries to addres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How do Korean American juveniles view American policing strategy?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African- or Hispanic-American communities (Brown & Benedict, 2002; Taylor, Turner, Esbensen, & Taylor, 2001). However, very few, if any, research of this nature has been published on the link betwee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he American polic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ill be significant in that it fills this gap by targeting Korean Americans.

## II. Literature review

This section reviews chronologically previous studies concerning policing strategy in order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current study. Wilson (1968) defined three types of organizational design (i.e., watchman style, legalistic style, and service style) and contended that each style emphasizes a typical type of policing strategy. For example, the watchman style organization focuses on the strategy of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instead of enforcing the law strictly. The legalistic style is directly opposite of the

---

[http://www.dhs.gov/xlibrary/assets/statistics/yearbook/2006/OIS\\_2006\\_Yearbook.pdf](http://www.dhs.gov/xlibrary/assets/statistics/yearbook/2006/OIS_2006_Yearbook.pdf).

watchman style and concentrates on the role of enforcing the law strictly. Finally, the service style organization emphasizes the role which provides service to people and does not rest heavily on the use of law as the principal method of solving problems.

According to White (1972), the strategy adopted by police officers themselves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a) tough cop, (b) problem-solver, (c) rule-applier, and (d) crime-fighter. First, the tough cop's strategy is based on the thought that police officers should be tough and that the cop's main job is to maintain control over criminal factors. Second, the strategy of the problem-solver is to present many kinds of assistance in order to cure criminals by understanding the causation of criminal behavior. Third, the rule-appliers perceive themselves as directed by rules rather than their organization's norms and perform their work by the rules not because they are right, but because their jobs become easier if they follow the law. Last, the crime-fighter regards his or her role as concentrating on the protection of society from potential law-violators. In addition, the crime-fighter tries to narrow his or her commitment directly toward fighting crime instead of broadly applying the various kinds of tasks which are now fundamental to the function of the police. Wilson (1968) and White (1972) laid a foundation for later studies by delineating the policing strategy and categorizing it into several types. However, there had been no effort until Shearer (1982)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people prefer each type of the policing strategy.

Shearer (1982) proposed three kinds of policing strategies even though they are not totally mutually exclusive and exhaustive: Order Maintenance (*OM*), Social Service (*SS*), and Law Enforcement (*LE*).<sup>4)</sup> He developed the *Law Enforcement Strategies Scale (LSS)* to assess cognitive beliefs about the three kinds of the roles. The *LSS* was conceptualized as opinions, attitudes, beliefs, and feelings that indicate the direction in which citizens think the police should move. This scale has been a useful framework for evaluating citizens' preferences for each policing strategy. Shearer (1988) administered the *LSS* to more than seventy cadets in a police academy in Texas who were pre-tested before an eighteen-week training program and post-tested after the program. He reported the following changes among police cadets after the program. First, police cadets had significantly lower *LE* scores. Second, they realized that the role of *LE* was not as important as they had previously conceived. Finally, the roles of *OM* and *SS* were

---

4) The *LE* indicates the extent to which a person feels that the police should enforce the law strictly and focus more on arresting serious criminals than on dealing with petty and minor offenses. The *OM* shows how strongly an individual feels that the police strategy should concentrate on keeping the peace and safety of a community, resolving conflicts, and settling disputes. The *SS* indicates the extent to which an individual feels that the police should (a) act as public servants who take care of community problems, (b) focus on community relationships with the police, and (c) help residents in need.

##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among Korea American Juveniles

perceived more valuable to them than that of *LE*. Based upon these results, he indicated that cadets of the police academy have the tendency to learn the police role in the academy ei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and that the *LE* scale is very sensitive to training and education. In addition, he reported that Caucasian police cadets made the greatest changes during the program in their perceptions of the role of order maintenance while non-Caucasian counterparts did not. He also said that the Caucasian officers were more likely to change their perceptions as to the role of *SS* than their non-Caucasian colleagues. Subsequently, the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s of the police role between the Caucasian and non-Caucasian officers was elucidated in this study.

Shearer and Barham (1989) reported that the scores of *LE* and *OM* do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olice cynicism in the sample of more than seventy patrol officers in a city of around two hundred thousand resident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American Great Plains. However, they concluded that there is an invers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S* score and police cynicism. In other words, police officers are more likely to be cynical when they do not adopt the idea of functioning as public servants, who regard community matters as the most important. Finally, the autho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service training for rank-and-file police officers because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handling citizens who ask for police service.

Zhao, Lovrich, and Robinson (2001) used longitudinal survey data in 1993 and 1996 from studies which were conducted by the Division of Governmental Studies and Services (DGSS) at Washington State University. This survey targeted more than two hundred police departments in almost fifty states through a mail-out/mail-back data-gathering method.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urvey, Zhao and associates reported that very little change has been made as to policing strategies preferences during the three years from 1993 to 1996. In addition, they found that the U.S. police prefer the crime control function to order maintenance and social service functions and that the shift to community-oriented policing programs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ugmented assignments of priority to the order maintenance function. Further, they reveal that the priority ratings of the social service function decrease as the crime rates increase among surveyed police departments. Zhao, He, and Lovrich (2003) added one more wave of survey data in 2000 to the survey data in 1993 and 1996, which were conducted by the DGSS and analyzed by Zhao, Lovrich, and Robinson (2001). They examined the effect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on three traditional American policing strategies: crime control, the maintenance of order,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 They argued that the three strategies had been almost equally emphasized in American police organizations during the 1990s.

The above studies reported mixed findings in terms of which policing strategy is preferred by peopl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commonality of all the above

studies was that they categorized policing strategies into more than two types. Another sizable body of research, however, divided the strategies into only two: service-oriented and law enforce-oriented. They reported that ordinary citizens give more priority to the service-oriented role than the law-enforcing one (Benedict, Bower, Brown, & Cunningham, 1999; John, Villaescusa, Toscko, & Powers, 1997; Zevitz & Rettammel, 1990). For example, more than three hundred seniors aged sixty-five and older were divided into two comparison groups in the Milwaukee area (Zevitz & Rettammel, 1990). One group received special police service through senior citizen anti-crime units of the Milwaukee Police Department while the other group did not. The authors reported that “three-fourths of elderly victims who received such service felt that the police were very sympathetic to their immediate plight compared to only about half of those who did not” (p. 36). Also, they contended that more than eighty percent of police-service recipients had very favorable attitudes toward the police regardless of clearance rates. Furthermore, they pointed out that police service toward the senior victims can present an accompanying profit for the victim as well as the police. Benedict, Bower, Brown, and Cunningham (1999) reported, using a stratified random sample ( $n = 205$ ) in Charleston, Illinois, that residents are more likely to appreciate the friendly and interactive manner of the local police officers. Also, the author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police department should “encourage police officers, when possible, to use diplomacy while dealing with citizens” in order to improve the police-community relationship (p. 152).

The conclusion of this review is that numerous studies have found that ordinary citizens give more priority to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than the law-enforcing one. Therefore,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service-oriented strategy and proposes two hypothese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current study, which is, “How do Korean American juveniles view American policing strategy?” The first hypothesis is that they would view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favorably. The next is that there would b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their preferences for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Below is a research design to test these two hypotheses, followed by research results.

### III. Methodology

#### 1. Sample

The universe of the current study is all Korean Americans in the U.S. However, in this study, all young Korean Americans in a large Southwestern city is defined as the population. This study targets only youths whose ages range from 13 to 18. The reason

for this selection is that the perceptions of minority youths seem to have been emphasized as a research target in several studies. For example, Cohen (1955) contends that some minority youngsters have a much higher chance to accept the negative norms and values and show less respect for the police than their older counterparts. Also, the use of minority youths as research subjects has been meaningful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be arrested than their White counterparts and come into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eiber et al., 1998; Snyder & Sickmund, 1996; Talyor et al., 2001). All Korean ethnic newspapers in the city were reviewed in order to identify Korean ethnic churches in Harris County, TX, which is the most populated county in the metropolitan Houston area. There were around 50 Korean ethnic churches in the commercial section of the Korean newspapers, with only two churches chosen because each chosen church has more than 50 juvenile Korean American believers and is located in the research county.

## 2. Data Collection

The first author, as an initial step, telephoned the pastors of the sampled churches one month prior to the distribution of questionnaires. Then, the author briefed them over the telephone on the full purpose of the research, any would-be questions, and problems that might take place. The pastors were very cooperative about the study and promised to provide all possible support to this research. As the next step, the author visited the two churches three weeks before distributing survey questionnaires to research participants and explained the details of this study to pastors. On March 10, 2005, the author visited the first church, explained the research to research subjects who attend the church, and reassured them of confidentiality and voluntariness of participation. Of the 150 packets distributed, including a parental consent form and survey questionnaire, respectively, 101 usable packets were obtained. On April 3, 2005, the author visited the other church, and the data collection process was the same as that of the previous church. Twenty-six usable packets were obtained from 60 packets distributed. For the final step, the author thanked the pastors for their cooperation. Each respondent had both English and Korean versions of an informed consent form for both the subjects and their parents. In addition, each participant had both English and Korean versions of survey questionnaires. A cover letter in the questionnaire briefly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study, voluntariness and confidentiality of research particip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primary author.

## 3. Survey Instruments and Data Analysis Process

The *Social Service Scale (SS)* and scales for contextual variables were administered to the sampled Korean American juveniles in the largest county in the southwestern United

States. The *SS* measures the extent to which an individual feels that the police should (a) act as public servants who take care of community problems, (b) focus on community relationships with the police, and (c) help residents in need. There are ten items in this scale (See Appendix A). Respondents used ten to fifteen minutes to complete the instrument.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use a six-point *Likert* scale. Responses to ten items were totaled and divided by ten to create the subject's score on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with higher scores showing stronger agreement with the strategy. Two community contextual variables were used in this study as predictor variables. "Community disorder" was examined by three items which were chosen from Skogan's (1990) eight items.<sup>5)</sup> On the other hand,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was measured by three items used by Cao and associates (1996).<sup>6)</sup> The data sets from the survey instruments were scored, coded, and analyzed by using SPSS. An *OL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measure which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affecting the *SS* score; also, the value of R square was utilized to determine what percentage of variance in the *SS* score was explained by a set of independent variables.

## IV. Findings

### 1. Description of the Sample

The sample size was 127. Seven independent variabl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1) age, (2) gender, (3) marital status, (4) length of U.S. residence, (5)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6) community disorder, and (7) attachment to Korean ethnic media. Table 1 breaks down mean, standard deviation, maximum and minimum scores of variables. Age was measured as the respondent's age in the year the questionnaires were implemented. Around 40% ( $n = 51$ ) aged from 13 to 14, 37.8% ( $n = 48$ ) from 15 to 16, and 22.1% ( $n = 28$ ) from 17 to 18. By gender, there were 70 male participants (55.1%) and 57 females (44.9%). The sample was predominantly unmarried ( $n = 125$ ; 98.4%). Categorical variables (e.g., gender and marital status)

---

5) 1) A noisy neighborhood (people who play loud music, have late parties, or have noisy fights) is a big problem. 2) Vandalism in my neighborhood (like kids breaking windows or writing on walls or things like that) is a big problem. 3) Garbage or litter on the streets or sidewalks in my neighborhood is a big problem.

6) 1) The people in my neighborhood watch one another's home when no one is at home. 2) In my neighborhood, people will call the police right away if they think a crime is being committed. 3) If some criminal was trying to rob me, my neighbor would not just stand there and watch, but would come help me out.

### Service-Oriented Policymaking Strategy among Korea American Juveniles

were modified to dummy variables (0 or 1) for their analyses; first, gender was calculated on the basis of participants' self-identification of being male or female. Male was coded as 0 and female as 1; second, in marital status, "the people who are married" was coded as 1 whereas "those who are not" was coded as 0. Length of U.S. residence wa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years the subjects had lived in America. "Attachment to Korean ethnic media" was determined based upon the frequency of watching and reading Korean ethnic media per week.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 = 127)*

Variables	Mean	SD	Min	Max
Outcomes variable				
SS	4.10	0.70	4.8	5.5
Independent variable				
Age	15.05	1.63	13.0	18.0
Length of U.S. residence	10.84	5.37	0.5	18.0
Gender	0.45	0.50	0.0	1.0
Marital Status	0.02	0.13	0.0	1.0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3.97	1.14	1.7	6.0
Community disorder	3.24	1.30	1.0	6.0
Attachment to Korean ethnic media	2.65	3.19	0.0	10.0

Most Korean American juveniles agreed with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For example, the percentage in ten items that the subjects “agree,” or “strongly agree” with the direction in which the police move to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ranged from 59.8% to 85%, while only 15% to 40.2% of them chose “disagree,” “strongly disagree,” or “very strongly disagree.” So, the first hypothesis of the current study, which is that they would view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favorably, was accepted. *OLS* regression analysis as a multi-variate technique would be a proper statistical technique to determine the predictive magnitude of a set of predictor variables on a single dependent variable (Gravetter & Wallnau, 2007). In other words, this statistical method would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a number of predictor variables and one dependent variable. As Table 2 indicates, an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affecting the *SS* score at the 99% confidence level. Accordingly, the second hypothesis, which is that there would b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their preferences for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was also accepted in this study. Its beta score was 0.274. The seven predictor variables included in this study accounted for 12.4% of variance in the *SS* score ( $R$ -square = 0.124). Based up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ill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chapter.

Service-Oriented Policymaking Strategy among Korea American Juveniles

<Table 2>

*Beta Score in the OLS Regression of Social Service (SS) Score*

---

Independent variable	Beta Score
Age	0.109
Length of U.S. residence	-0.158
Gender	-0.031
Marital Status	-0.122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0.274**
Community disorder	0.117
Attachment to Korean ethnic media	-0.024
R-square = 0.124	
F = 2.360	
Sig. = 0.027	

---

\* P<0.05; \*\* P<0.01; \*\*\* P<0.001; N = 127

## V. Conclusion

This study resulted in two observations. On the one hand, most Korean American juveniles agreed that the police should act as public servants who take care of community problems. In other words, they put more emphasis on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than the tough-cop policing strategy which concentrates on enforcing the law strictly.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Benedict, Bower, Brown, & Cunningham, 1999; John, Villaescusa, Toscko, & Powers, 1997; Zevitz & Rettammel, 1990). Therefore, the American police should act as kind cops, helping residents in need, rather than tough cops, enforcing a law strictly, if they hope to satisfy Korean American juveniles. As one of the kind-cop policing strategies, a community-oriented policing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by the polic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example, if the police held more meetings with community groups, it might improve the relationship not only betwee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but also among the community members themselves (Davis & Miller, 2002; Garcia & Cao, 2005). This neighborhood cohesion will cause residents to feel connected to the commun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neighborhood will lead to the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Cao et al, 1996).

On the other hand,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played the most determinant role in affecting Korean American juveniles' preference for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more satisfied with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Korean American juveniles are in their community, the more strongly they prefer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Conversely,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less satisfied with their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the juveniles are, the more strongly they desire tough-cop policing strategies. Subsequently, the police are expected to develop a service-oriented policing program in the Korean community when the juveniles have a high level of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However, the police are required to develop a para-military policing strategy when the juveniles have a lower level of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In sum, American police could implement a dichotomous policing strategy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order to please Korean American juveniles.

The Asian population in America is predicted to increase from 10.7 million in 2004 to 33.4 million in 2050, with its growth rate being more than two hundred percent during this period (U.S. Census Bureau, 2008b). As time goes by, the Asian population will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American society in terms of at least population size. Especially, Korean Americans, as one of the major Asian American groups, have contributed and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Asian population.

###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among Korea American Juveniles

So, the current study will be significant in that it could enhanc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y American citizens as well as law enforcement agenci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is limited to some extent. Therefor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First, there should be research which targets the Korean American juveniles under state custody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contacts with the police than other law-abiding counterparts. Second, a longitudinal study is recommended in order to screen the time sequence between the predictor and outcome variables and to identify intervening variables (Hagan, 2007; Maxfield & Babbie, 2008). Third, there should be future studies which will target other Asian communities because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might not be generalized to different ethnic communities. Finally, this study includes only individual-level independent variables. The extent to which Korean American juveniles express a preference for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may be affected by their age, length of U.S. residence, gender, marital status,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community disorder, and attachment to Korean ethnic media. However, their opinions about the strategy, also, may be influenced by group-level variables because the juveniles are nested within different geographical locations such as city, county, and state (Bryk & Raudenbush, 1992; Luke, 2004). Therefore, future studies should utilize a statistical technique by which the variation in their cognitive beliefs about policing strategy can be accounted for by group-level factors (e.g., crime rate, homicide rate, and concentrated disadvantage in their neighborhood).

## REFERENCES

- Barlow, D. E., & Barlow, M. H. (2000). *Poli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 American Story*. Prospect Heights, Illinois: Waveland Press.
- Benedict, W. R., Bower, D. J., Brown, B., & Cunningham, R. (1999). Small town surveys: Bridging the gap between police and the community.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5, 144-54.
- Brwon, B., & Benedict, W. R. (2002). Perceptions of the police: Past findings, methodological issues,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5(3), 543-580.
- Bryk, A. S., & Raudenbush, S. W. (199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Cao, L., Frank, J., & Cullen, F. T. (1996). Race, community contex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5(1), 3-22.
- Carter, D. L. (2002).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Cohen, A. (1955). *Delinquent Boys*. New York: Free Press.
- Davis, R. C., & Miller, J. (2002).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erceptions of community policing among members of six ethnic communities in Central Queens, New York City.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9, 93-111.
- Garcia, V., & Cao, L. (2005). Race and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in a small c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2), 191-199.
- Gravetter, F. J., & Wallnau, L. B. (2007).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 Hagan, F. E. (2007). *Essentials of Research Methods in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2<sup>nd</sup>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Hunter, R. D., Barker, T., & Mayhall, P. D. (2004). *Police-community Relations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urh, W. M. (1998). *The Korean Americans*. Westport, CT: Greenwood.
- John, C., Villaescusa, T., Toscko, L., & Powers, S. (1997). Attitudes toward police: An evaluation of community perceptions of safet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4, 114.
- Leiber, M. J., Nalla, M. K., & Farnworth, M. (1998). Explaining juveniles' attitudes toward the police. *Justice Quarterly*, 15(1), 151-174.
- Luke, D. A. (2004). *Multilevel Model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xfield, M. G., & Babbie, E. (2008). *Research Methods for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5<sup>th</sup> ed.).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among Korea American Juveniles

- Min, Pyong Gap (1996).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alla, M. K., & Hummer, D. (1999). Assessing strategies for improving law enforcement/security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community polic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23(2), 227-239.
- Park, K. Y. (1997). *The Korean American Drea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Peak, K. J., & Glensor, R. W. (2004). *Community Policing and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Practice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Poole, E. D., & Pogrebin, M. R. (1990). Crime and law enforcement policy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Policy Studies*, 13(2), 57-66.
- Shearer, R. (1982). *Law Enforcement Strategies Scale*. Huntsville, TX: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 Shearer, R. (1988). Learning the police role: Subtle changes in academy cadets. *Texas Police Journal*, September, 8-11.
- Shearer, R., & Barham, J. D. (1989). Police cynicism reconfirmed. *Texas Police Journal*, November, 12-14.
- Shusta, R. M., Levine, D. R., Harris, P. R., & Wong, H. Z. (2002). *Multicultural Law Enforcement: Strategies for Peacekeeping in a Diverse Societ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Skogan, W. G. (1990).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Neighborhood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nyder, H., & Sickmund, M. (1996).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A Nation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Taylor, T. J., Turner, K. B., Esbensen, F., & Winfree, L. T. (2001). Coppin' an attitude: Attitudinal differences among juveniles toward poli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9(4), 295-305.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08a). *Race and Hispanic or Latino: 2000*. Retrieved November 24, 2008, from [http://factfinder.census.gov/servlet/QTTTable?\\_bm=n&\\_lang=en&q\\_r\\_name=DEC\\_2000\\_SF1\\_U\\_QTP3&ds\\_name=DEC\\_2000\\_SF1\\_U&geo\\_id=01000US](http://factfinder.census.gov/servlet/QTTTable?_bm=n&_lang=en&q_r_name=DEC_2000_SF1_U_QTP3&ds_name=DEC_2000_SF1_U&geo_id=01000US)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08b). *Census Bureau Projects Tripling of Hispanic and Asian Populations in 50 Years*. Retrieved November 24, 2008, from <http://www.census.gov/Press-Release/www/releases/archives/population/001720.html>
- White, S. (1972). A perspective on police professionalization. *Law and Society Review*, 7(1), 61-85.

- Wilson, J. Q. (1968). *Varieties of Police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Zevitz, R. G., & Rettammel, R. J. (1990). Elderly attitudes about police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Police*, 9, 25-39.
- Zhao, J., Lovrich, N. P., & Robinson, T. H. (2001). Community policing: Is it changing the basic functions of policing?: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200+ municipal police agenci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9(5), 365-377.
- Zhao, J., He, N., & Lovrich, N. P. (2003). Community policing: Did it change the basic functions of policing in the 1990s? A national follow-up study. *Justice Quarterly*, 20(4), 697-724.

## Appendix A

1. Police officer has to be a social worker and psychologist because the officer is frequently the only person available to deal with a problem.
2. When it gets down to reality, police officers really are supposed to serve people in need.
3. Referring citizens with specific needs to the proper agency should be a major part of a police officer's duties.
4. Let's stop fooling ourselves about what the police do and admit that they really are supposed to help people who can't handle their own problems.
5. The police should find people in need and direct them to those agencies or community resources where their needs can be met.
6. The para-military style of the police today should be abandoned in favor of a style that emphasizes community relations.
7. The police today are operating as if we still lived on the frontier when they should be more involved in social service.
8. The police still maintain the "cops and robbers" image when the police should spend most of their time helping people with day to day problems and crises.
9. We need to change the image of the people from "tough cops" to sensitive negotiators of community problems.
10. Maintaining good relations in a community is probably a better strategy for the people than anything else.



## 제3주제



# 각국 公警護制度의 비교연구

임준태교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차 례

- I. 경찰작용의 본질과 경호직무
- II. 한국경호조직의 연혁 및 현황
- III. 각국의 경호체제와 현황
- IV. 바람직한 경찰경호시스템 구상

# I. 경찰작용의 본질과 경호직무

## 1. 警察作用의 本質로서 危險防止

- 실질적 의미의 경찰  
“대통령경호실”경우, 명칭 상관없이 “要人の 신변에 대한 위험(혹은 위해)을 방지하는 국가작용” 때문에
-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성격 불문하고 제도적(조직적) 의미의 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직무(사무)의 의미
- 경찰직무로서 危險(危害)防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5호, 제5조, 제7조  
대통령경호실법 제2조 등
- 위험방지의 보호법익으로서 公共의 安寧: 국가기능의 무사온전성, 공동체의 법질서, 개인적 법익까지 보호

## ▶ 2. 경호의 개념 및 근거법령

- 경호의 개념 및 대상
- ▶ 경호란 정부요인, 국내외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직접, 간접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 ▶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경찰상 위험방지 (Gefahrenabwehr) 활동
- 경호직무에 대한 근거법령
- ▶ 최초의 경호관련 내무부 훈령 - (내무부훈령 제25조)
- ▶ 경찰관직무집행법 - (1981년 요인경호 일반경찰작용으로 규정)
- ▶ 대통령등 경호에 관한법률
- ▶ ~~前~~ 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 (경직법 제2조, 경호규칙 제 3조)
- ▶ 기타 하위법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경호규정.규칙.편람

## II. 한국경호 조직의 연혁 및 현황

### 1. 조선시대 및 舊韓末 경호제도

- 갑오경장 이전
- ▶ 조선시대 경찰기관은 다원적, 경찰권력은 분화  
조선 초기 경호조직은 태종때부터 갑사(甲士)  
조선후기의경호조직은 인조때 호위병력으로 만든 御營軍  
포도청은 조선시대의 전문적이고 독립된 경찰행정아문
- ▶ 舊한말 경호제도: 무위소(武衛所) 및 무위영(武威營)  
- 갑오경장후 근대적 경찰조직과 경호부서
- ▶ 갑오경장(1894년) 근대적 경찰에 관한 조직법.작용법적 근거 마련  
1894년 內務衙門에 소속  
1895년 宮內警察署(경무대경찰서에 해당) 신설
- ▶ 1895년 궁내경무서 설치관련 법령 제정
- ▶ 근대 경호(警護)제도: 경위원(警衛院, 1901년)
- ▶ 皇宮警衛局(1905년)
- ▶ 1910년 통감부령 44호에 황궁경찰국 통합 경무통감부 8개 경찰서  
(일제강점기: 皇宮警察署, 창덕궁경찰서)

### 2. 해방, 정부 수립 이후 제2공화국까지

- 1945년 10월 미군정 하에 경무국 설치
- 1946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편
- ▶ 해방후: 동대문경찰서(창덕궁지서),
- ▶ 내무부 치안국(경찰청의 전신) 산하 경위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 호위담당
- ▶ 1949년 경무대 경찰서 창설
- ▶ 1949년 12월 29일 내무부훈령 제25호로 "경호규정" 제정,
- ▶ "경호(警護)"라는 용어. 즉 경호는 警察이 대통령을 護衛한다는 뜻.
- ▶ 警護라는 용어의 상용과 경호업무체제가 정비되었음. 전문 26조로 구성.
- ▶ 4.19혁명과 경무대경찰서 폐지(1960년 6월 29일)
- ▶ 경무대 지역의 경비업무는 서울시경찰국 경비과에서 담당 1960년 12월 30일 윤보선 대통령이 景武臺를 靑瓦臺로 개칭
- ▶ 4.19의거 이후 제2공화국 탄생, 부통령 경호는 서울시경이 담당
- ▶ 1961년 5.16 군사쿠데타 후 "경호대설치령(중앙정보부령 제25호)" 제정  
중앙정보부 경호대를 발족, 박정희 대통령 취임후 「대통령경호실」이 창설

### -제3공화국에서 최근까지 경찰경호조직 변천

- ▶ 1949년 경무대 경찰서 유지되다가, 1960년 6월 28일 경무대경찰서가 폐지. 같은 해 서울시경 경비과 소속의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대통령경호직무를 담당
- ▶ 1967년 1월 12일 「경비과」로 개칭
- ▶ 1974년 서울시경 소속의 「22특별경비대(대장은 총경급)」설치
- ▶ 1975년 경호실 제7과를 「101경비대」로 개칭
- ▶ 1975년 치안본부 경비과 「경호계.방호계」신설
- ▶ 1976. 3. 29. 101경비대를 「101경비단(단장: 警務官)」으로 개칭.  
▶ 1979년 10월 26일 10.26사태(대통령시해사건)를 경험
- ▶ 1999년 서울지방청 기동단 소속의 「120경비대」를 지방청次長 소속 직할대로 전환, 「202경비대」로 변경
- ▶ 2001년 12월 27일 「22특별경비대」명칭을 「22경찰경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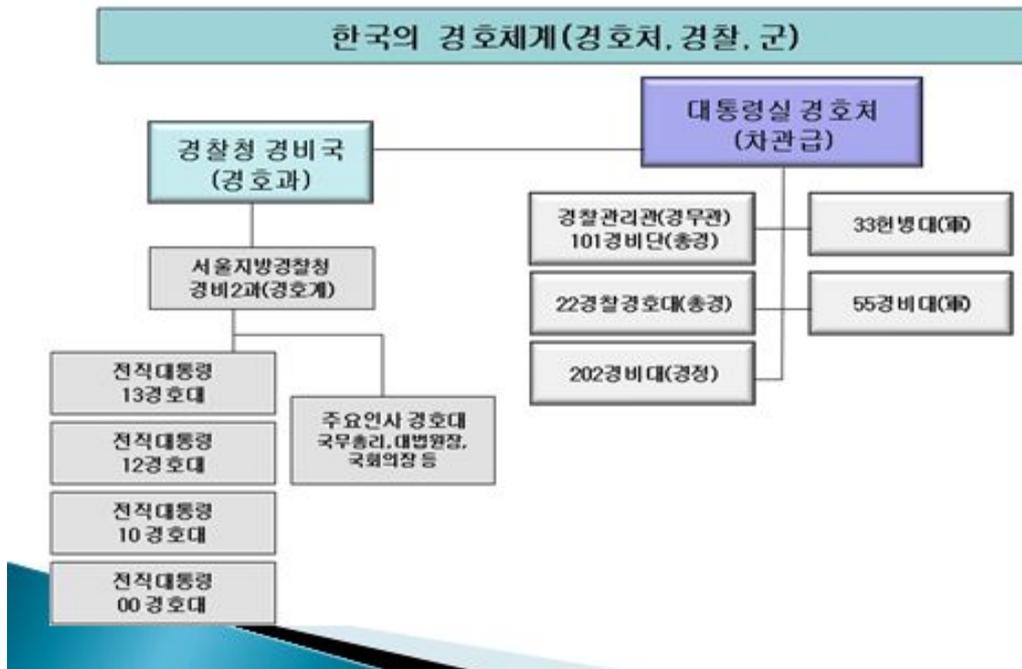
### 대통령실 경호처 연혁과 현황

- ▶ 1963.12.17 대통령경호실 독립조직으로 정식 창설
- ▶ 1974. 8.15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및 육영수여사 피격사건)발생
- ▶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10.26사건)
- ▶ 1983.10. 9 동남아 순방시 危囂 기도 (미안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 ▶ 1988. 8.22 제1차 대통령경호실 경호요원 공개채용 실시
- ▶ 1993. 2.26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전문경호관 출신 박상범취임
- ▶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경호실법】 2차 개정, 경호공무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특정직
- ▶ 2003. 3. 3 제12대 대통령경호실장 김세옥 취임
- ▶ 2008년 2월 개정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009년 1월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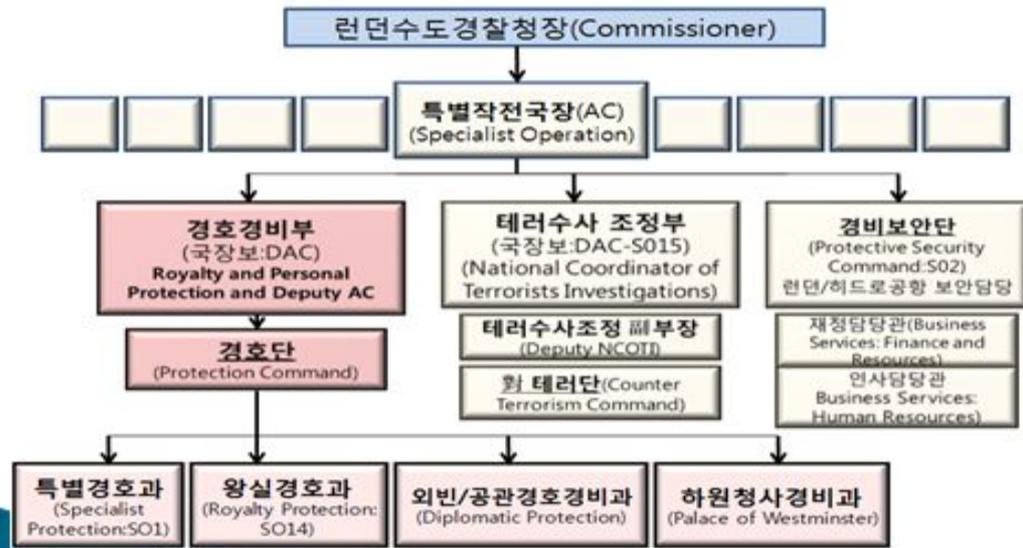
### III. 각국의 경호체제와 현황

1. 일반경찰 주도형 경호체제 국가: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스위스

2. 특별경찰 주도형 경호체제 국가: 미국

3. 일반/특별경찰 혼재형 경호체제 국가: 프랑스

## 영국의 경찰경호 체계와 현황



런던수도경찰청 산하 경호경비부서 조직도(2008년 5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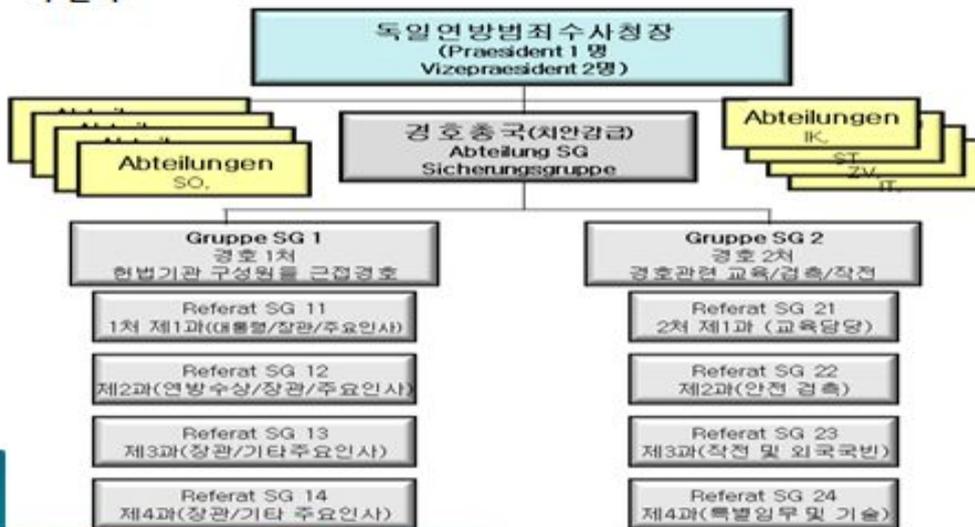
## 독일의 경찰경호 체계와 현황

### -경호관련 연방경찰기관

- ▶ 독일은 연방제 국가, 基本法(Grundgesetz)에 의해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각주의 사무.
- ▶ 연방내무부 외청격인 연방범죄수사청(BKA) 경호총국 소속 수사경찰(Kriminalpolizei)요인경호임무, 요인들의 집무실.
- ▶ 중요청사경비 및 외곽경호는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경찰청(Bundespolizei, 舊BGS) 소속 정복경찰이 담당

### -연방범죄수사청(혹은 연방수사국 (Bundeskriminalamt: BKA))

- ▶ 연방내무부산하 外廳. 특정한 수사에 있어 관할권,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 부여, 「연방수사청설치법」에 의해 각주의 내무부산하에 州범죄수사청(LKA)이 설치



## -연방경찰청(舊 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 BGS)

### ▶ 業務

항만, 공항, 국경통제소 등에서 출입국관리업무, 철도상의 경비업무를 맡음.  
헌법기관의 청사 경비 담당하며, 요인경호업무지원.  
대규모 시위사태 경비수요 발생할 시에 각주를 지원하는 업무.

### ▶ 경호임무와 구체적인 청사경비 대상

☒ 연방대통령 관저(Bundespraesidentialamt)

⇒ 연방총리 관저(Bundeskanzleramt)

⇒ 외무부 청사(Auswartiges Amt)

⇒ 연방내무부 청사(Bundesministerium des Inn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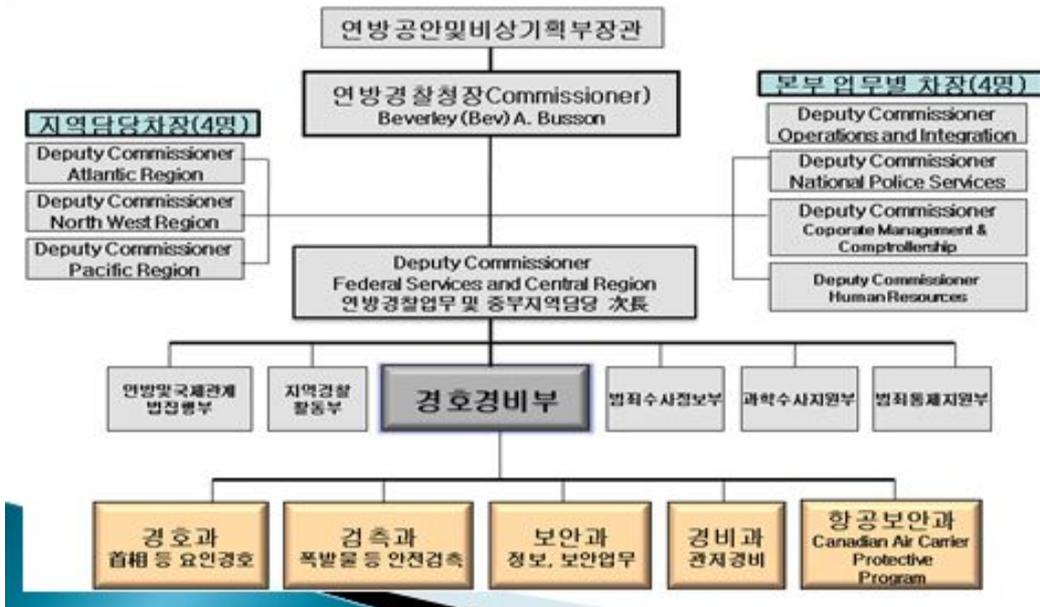
⇒ 연방법무부 청사(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바덴-뷔르템베르크州 칼스루에市에 소재한 연방헌법재판소청사



연방 首相에 대한 공격행위(Attacke auf Merkel)를 한 청년체포

## 캐나다 연방경찰(RCMP)의 경호체계와 현황



## 일본경찰의 경호체계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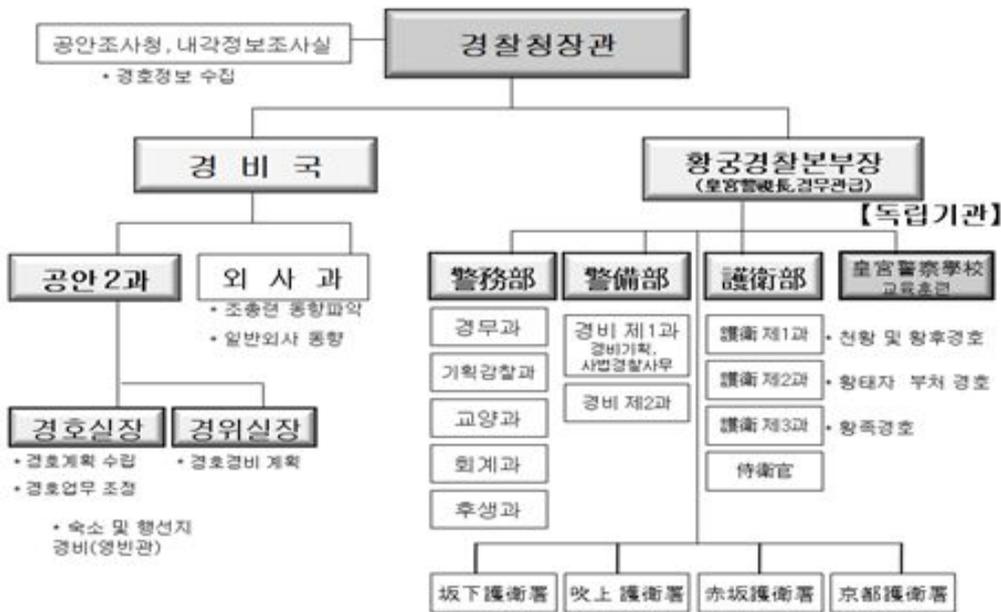
### -경찰청 조직과 경호직무

- ▶ 경호업무부서는 공안2과(경호과장). 경호업무는 경찰청의 지휘·감독하에 도도부현 경찰이 담당하지만, 수상에 대한 경호는 동경 경시청 경비부에서 담당. 도도부현 경비부 소속 경호담당 경찰관과 합동으로 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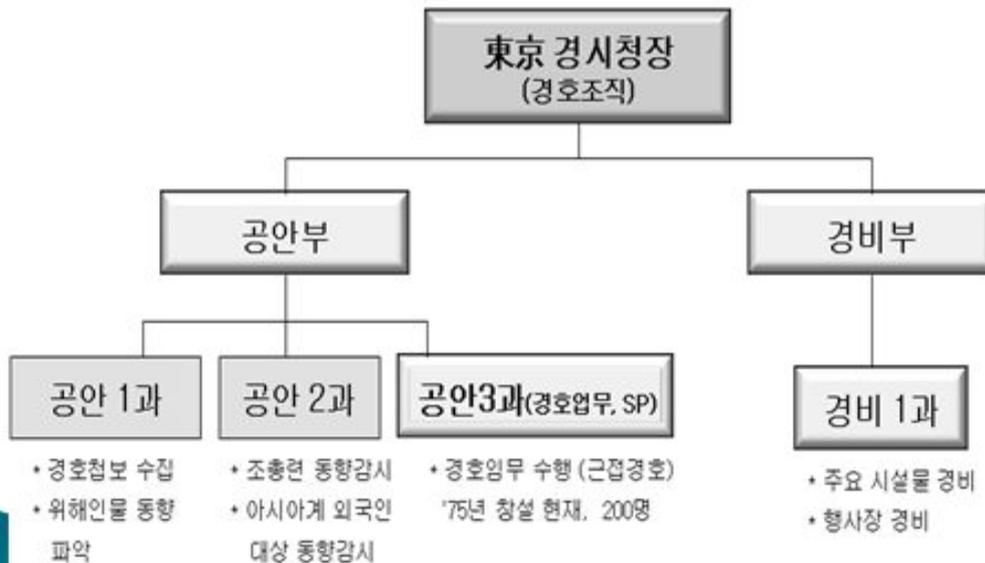
### -도도부현 경찰과 경호조직

- ☞ 공안1과: 경호첩보수집, 위해인물 동향파악
- ☞ 공안3과: 경호담당과(요인경호대, SP: Security Police)
- ☞ 경비1과: 주요시설 및 행사장의 외곽경비를 담당

## 일본의 경찰경호 체계와 현황



## 동경 경시청 경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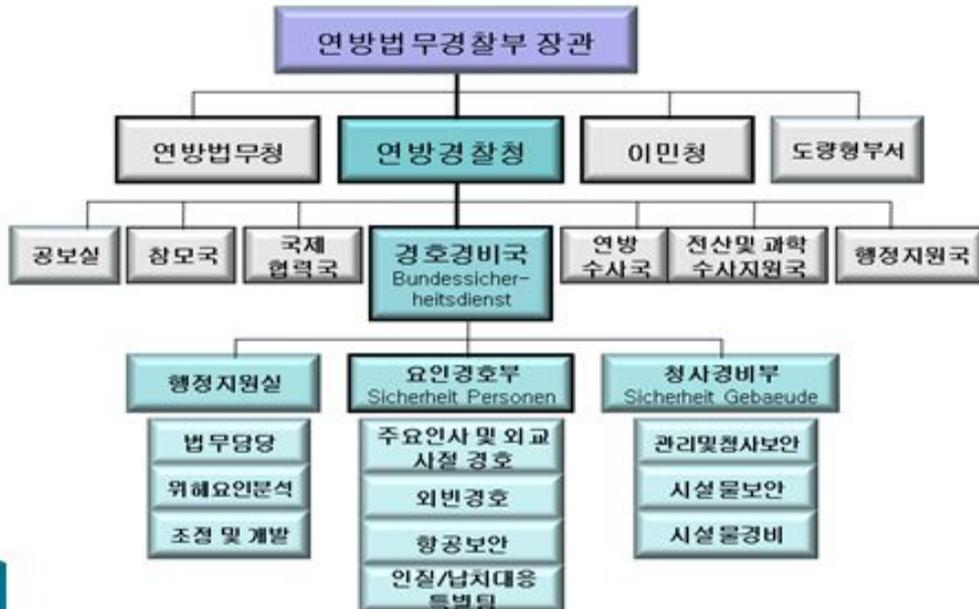
## 스위스 연방경찰의 경호체계와 현황

### -연방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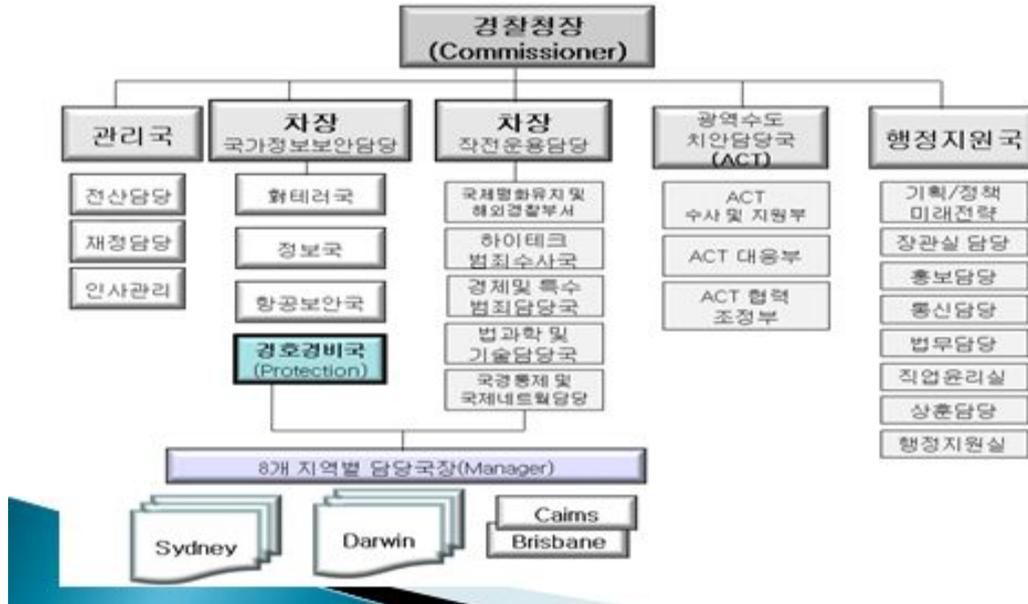
스위스연방의 내적 안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  
정보, 조정, 분석 위한 중앙부서로서 26개 칸톤과 국제경찰활동의 파트너 역할 수행.

### -연방경찰청 내부조직

- 공보실(Mediendienst)
- 참모국(Stab)
- 국제관계 및 위기관리국
- 범죄예방 및 분석국(Hauptabteilung Dienst fuer Analyse und Praevention)
- 연방수사국(Hauptabteilung Bundeskriminalpolizei)
- 과학수사지원국(Abteilung Dienste)
- 행정지원국(Abteilung Support)
- 연방경호경비국(Abteilung Bundessicherheitsdienst)



## 호주 연방경찰의 경호체계와 현황



## 특별경찰 주도형 경호체제 국가: 미국의 경호체계와 현황

### -국토안보부(DHS)의 조직과 임무

#### ▶ 국토안보부 조직

국토안보부는 22개 부서 통합 운영되며 17만 명 근무

#### ▶ 국토안보부 임무

- ⇒ 국가 수호 위해 국가 전력 선도
- ⇒ 테러 공격 예방, 제지, 국가위협, 위험으로부터 국가 보호
- ⇒ 국경의 안전을 책임지고 적법한 이민자와 방문객을 환영 통상교섭 장려하는 직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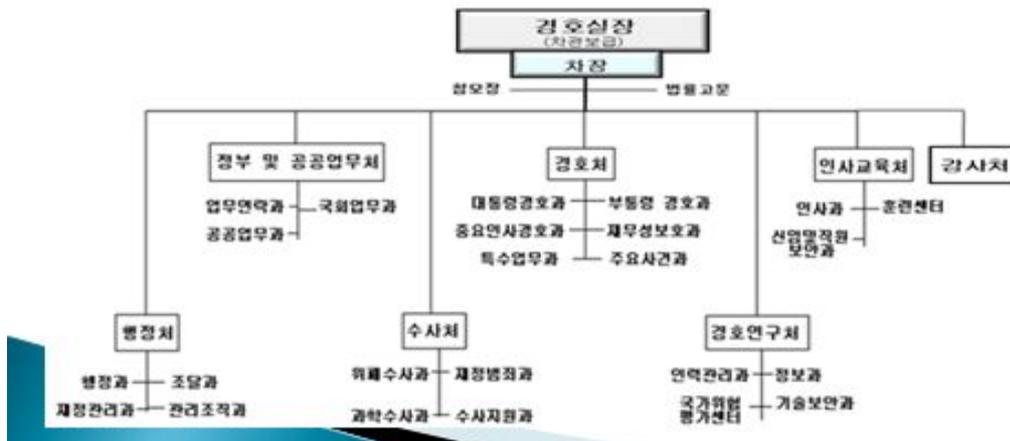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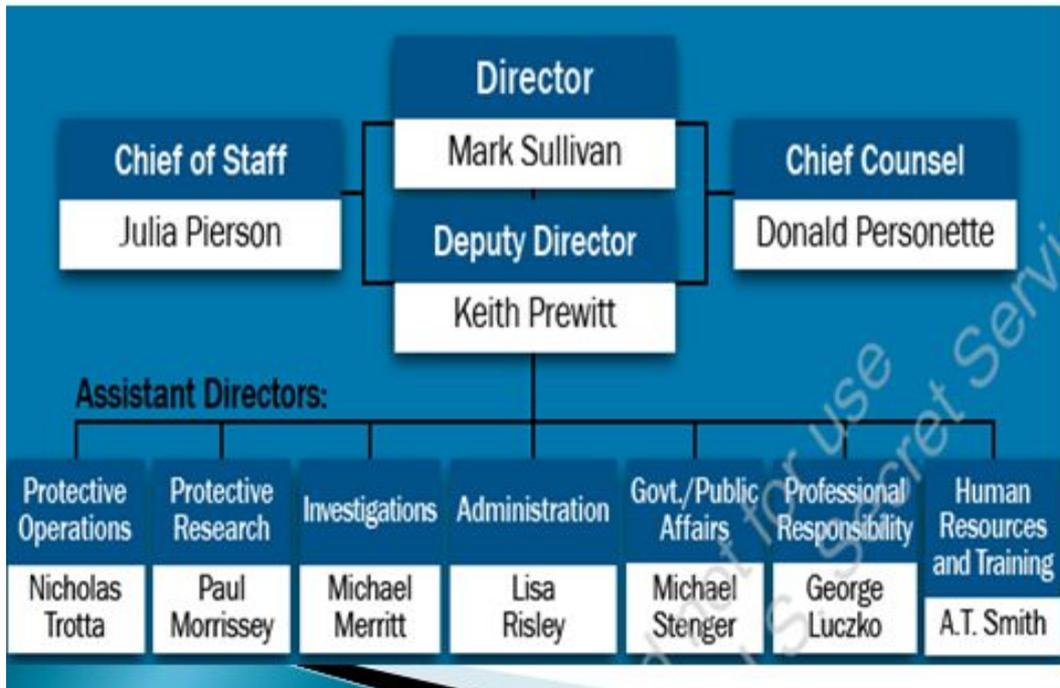
- 국토안보부 소속의 경호실(Secret Service) 임무와 조직

▶ 임무

창설 목적이 위조지폐 수사였으나 Garfield 대통령과 Mckinley 대통령 암살사건 이후 1960년 S.S가 대통령 경호임무를 맡게 되었다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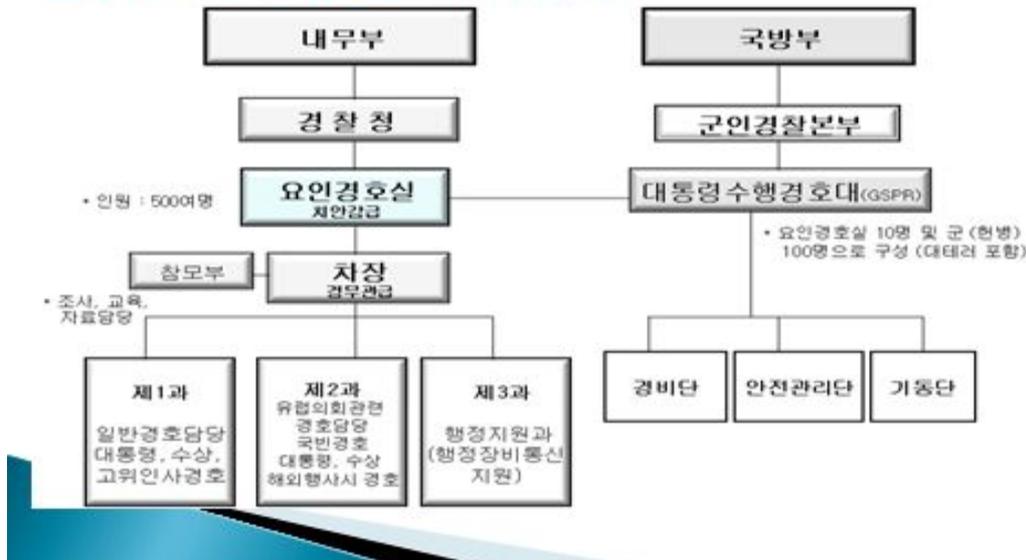


美언론, 탱크 같은 새로운 대통령 전용차 공개

## 국무부(외무부)소속 경호보안국(BDS)조직



## 일반/특별경찰 혼재형 경호체제국가: 프랑스의 경찰경호 체계와 현황



## 프랑스의 경찰경호체계와 현황

### -경찰청소속 경호부서

- ▶ 1935년에 창설, 최초「공식방문과(Voyage officiel)」에서, 1994년에 「요인경호실」로 개칭.
- ▶ 프랑스의 주요 인사로는 대통령, 수상,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의 근접경호를 맡음.
- ▶ 이외 국방부 소속의 군인경찰인 관저경호대(300여명) 운영.

### -파리지방경찰청(La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 ▶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관할
- ▶ 파리지방경찰청조직  
4개 행정부서(인사예산과, 총무과, 교통관리과, 경비과).  
6개의 집행부서(교통과, 방법과, 형사과, 정보과, 감찰과,장비과).



과거에 대통령에 대한 근접경호(close personal protection for the French President)업무를 수행하던 **대통령수행경호대(GSPR)**는 일반국립경찰에서 차출된 30명, 군인경찰에서 차출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Nicolas Sarkozy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국립경찰청 산하 **요인경호실** 및 **對테러실**(RAID-1985년 창설)에서 차출된 **일반경찰관들**로만 충원되어 있다고 한다.

## IV. 바람직한 경찰경호시스템 구상

### 1. 경호직무를 경찰고유사무로 인식

- 경호실 조직 향후 직무의 본질적 특성(위험방지작용)과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여 “실질적·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탈바꿈

### 2. 경찰경호 조직의 통합화

- 경호조직의 통합화 추세와 필요성
- 경찰청에 「경호국」등 전담 집행조직 설치하는 방안
- 서울지방경찰청내 「경호과」를 신설하는 방안

### 3. 한국 경호조직의 변화모색

#### 4. 경호직무의 전문화

-경호경찰의 직무전문성을 향상방안  
선발→교육·훈련·再교육(질적 향상 및 양적 확대  
도모)→배치 → 인사관리(경과제)

#### 5. 경호관련 법령의 정비.







## 제4주제



# 범죄예방에 대한 민간경비의 역할

- 한계점과 개선책 -

공 배 완 (경남대학교)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참고문헌        |
| III.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제도적 개선책 필요 |             |

## I. 서론

과거와 비교해 노약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살해 사건 등 ‘묻지마 식’ 많은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9년 6월 한 초등학생이 엽총에 맞아 숨졌고, 30대 여인이 시신으로 경기도의 한 호수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3월에는 운동 중이던 여고생이 30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행으로 숨졌고, 2007년 4월에는 길을 가던 70대 노인이 갑자기 나타난 피한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길을 지나다 30대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1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배를 보던 교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병원에 들어가 방화를 하기도 하고, 비록 몇 년 전의 일이지만 2003년 2월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에서 승객의 방화로 인하여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 식’의 범행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나 자신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은 사회전체를 불신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분위기이다. 무동기 범죄로 불리는 ‘묻지마 범죄’는 특정 원한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죄의 양상도 잔혹한 경우가 많아 치안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범죄예방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제도상 범죄예방과 수사 및 진압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국가기관이 경찰이다. 경찰의 범죄예방 역할과 수사 및 진압기능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범죄의 증가는 날로 진화하면서 이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경찰의 보조적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나 민간경비업체 등은 제도적인 한

2009년 한국치안행정학회 하계학술세미나

계상 범죄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인 경찰조직을 보면 경찰서 244개, 지구대 810개(2008년 12월 31일 기준)가 조직되어 있고,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의 변화는 2000년 522명에서 2008년에는 49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경찰인력과 경찰조직이 개선되고 치안역할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민간범죄예방 단체로서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경우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3,861개의 조직에 102,551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예방에 대한 이들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이며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범죄예방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의 경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공공의 치안유지 개념보다는 수익자 부담원리에 따라 방법활동이 이루어짐으로서 공공성에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치안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단체나 민간경비 등의 적극적인 이용이 요망되고 있다.

[자율방범대 현황]

(2008년 12월 31일)

구분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조 직	인원(명)	조 직	인원(명)
2006	3,889	98,739	1,261	23,580
2007	3,738	98,826	1,482	25,662
2008	3,861	102,551	1,420	30,993

\*자료: 경찰청

[민간경비업체 수]

(2008년 12월 31일)

구분	업체 수	업종 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2006	2,671	3,137	2,549	46	360	137	45
2007	2,834	3,387	2,726	52	416	138	55
2008	3,043	3,628	2,923	51	446	146	62

\*자료: 경찰청

[경비원 현황]

(2008년 12월 31일)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경비원 수	127,620	135,400	142,457

이에, 본 논문은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과 활용도 제고, 그리고 민간경비의 한계점과 개선책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경비의 인식과 역할, 활용성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를 하였다. 설문 결과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부족과 범죄예방 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한계점 등이 지적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었다.

## II.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2007년 4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의식조사 실시. 연령대별로는 20대 30명(25%), 30대 30명(25%), 40대 30명(25%), 50대 30명(25%)이 표집되었고, 성별로는 남자 60명(50%), 여자 60명(50%)으로 의식조사에 대한 평균 산출을 맞추기 위해 연구자의 의도적인 조사와 분포에 의해 구성되어졌다. 일반성인의 학력정도는 응답자의 34명(29%)이 전문대 이상의 대졸학력자였고, 고졸학력이 62명(51%), 중졸학력 7명(6%), 기타 17명(1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 분포도는 회사원이 30명(25%)이었고, 자영업자가 38명(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30명(25%), 기타 22명(18%)으로 표집되었다.

1) 범죄예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의 범죄예방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는 답변(20%)보다는 잘못되어 있다는 답변(80%)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 현행 범죄예방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8%가 시민의 안전의식 미흡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경찰방범활동의 미흡(34%)을 꼽았다. 기타 개인안전장치의 소홀(16%)과 민간안전기구의 미흡(12%) 등이 나타났다.

3) 사회범죄 예방기관으로서 신뢰할 만한 기관은 경찰이 전체의 5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간경비회사(21%)와 개인적 대책(19%), 소방(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으로는 경찰기관이 36%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34%로서 다음으로 많았으며, 민간경비기관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견(26%)도 비교적 높게 나왔다.

4) 민간경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간경비에 대해 잘 알고 있다(15%)는 응답보다는 잘 모르거나 조금 알고 있는 정도가 각각 21%와 64%로서 총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민간경비가 범죄예방 기능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8% 정도만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45%의 응답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27%나 되었다.

5) 민간경비가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라는 답변이 전체의 35%를 차지하였고 민간경비에 대해 잘 모르거나(24%) 또는 특정인물에 대해서만 필요하다는 인식(23%), 그리고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18%를 차지하였다.

6)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지적이 전체 응답자의 42%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범죄예방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답변도 29%를 차지하였으며, 범죄예방에 대해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응답도 16%를 차지하여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7)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에 대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전체 응답자의 34%를 차지하였고, 범죄예방기구로서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31%를 차지하여 민간경비에 대한 안전의존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8) 범죄예방을 위해 민간경비회사에 의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생각해 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전체의 52%를 차지하였고, 민간경비회사에 의뢰하겠다는 답변도 31%를 차지하여 경찰의 보완적 또는 보조적 관계에서 민간경비를 고려하는 경향도 보였다.

9) 특히, 민간경비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41%가 ‘신뢰 한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31%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여 민간경비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민간경비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보이고 있었다.

10)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없다’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3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민간경비는 범죄예방기구로서 미흡하다’라는 답변이 31%, ‘범죄예방의 성격이 아니다’ 16%, 기타 19% 등으로 나타났다.

### III.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제도적 개선책 필요

#### 1. 민간경비원 선발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에서 민간경비요원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약조건 없이 일정 연령이상과 정상적인 체력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민간경비요원이 될 수 있다.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라 만18세 이상과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민간경비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다만, 신입교육에 대한 내용만 다를 뿐이다.

반면 경비지도사의 경우는 경비업법 제10조의 동일조항을 채용조건으로 하면서 공개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하는 점이 일반경비원과의 차이점이다. 청원경찰법 제5조에 따라 채용되는 청원경찰의 경우는 연령의 하한선(만18세 이상)과 상한선(만50세 미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신장과 체중, 시력 등 신체적 조건이 채용조건으로 명시되었다고 하는 점이 다른 민간경비원과의 채용과정에서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채용과정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민간경비원 선발제도는 ‘일반경비요원’(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청원경찰)과 ‘경비지도요원’(경비지도사)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일반경비요원은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본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경비지도요원의 경우는 정상적인 기본요건과 더불어 관련분야에 대한 다소의 전문지식이 시험을 통해서 요구된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의 채용과 선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의 채용분야가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저하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로 인한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미 정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사회적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전문성이 배제된 채용과정은 저임금 생산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확산되어 저학력자나 고령자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이러한 현실은 민간경비의 기본취지인 범죄예방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서 사고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게 되고 사고의 진압을 지연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 보안업체나 신변보호의 경우 짧은 계층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채용과정에서의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이직율도 높다고 하는 점이다.

여섯째, 무자격자의 채용으로 인해 경비요원에 의한 범죄가 발생됨으로 경비요원의 자질문제가 사회적인 불신으로 파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경비지도사의 시험 식 선발제도도 다소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몇 개월 동안 단순 암기식 시험만으로 일반경비요원을 지도·감독·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경비실무의 중요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저해는 물론 민간경비 전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작용하면서 전문직종으로서의 정착과 학문적 정체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경비원으로서의 신체적 조건은 직무의 성격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명시가 생략됨으로 해서 신체불구나 장애인도 응시 가능할 수 있다는 법적인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 민간경비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격요건의 강화이다. 사람으로서 지니는 정상적인 기본요건 외의 구체적 신체조건과 실무능력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채용조건으로서의 민간경비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체건강한 자 등의 명시와 자격등급을 학력별 또는 경

력별로 차등화(1-2-3급)하는 방편 등이 보완책으로서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경비요원의 선발과정을 전문교육의 이수 정도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서(고졸-전문대졸-대졸) 자격요건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전문성 확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자격요건의 강화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 요인이라는 견해이다.

그리고 자격기준의 세분화 방법과 이를 통한 선발 및 채용과정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특수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등 업무별로 분류되고 있다(경비업법 제2조). 이에 따른 자격의 세분화 방법도 필요하다. 즉, 법적인 경비업무의 성격에 따라 자격을 세분화하고 관련분야의 자격 소지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국처럼 관련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또한 자격증 자체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라이선스(licence)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은 다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관련분야 대학 전공졸업자들에 대한 채용과정의 개선방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년제, 4년제 포함하여 약 60여개 대학에서 경호경비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이들 졸업생들이 사회적으로 학력이나 자격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나 기업의 채용과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대학졸업자들이 민간경비요원으로 처음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경비원과 동일하게 신입교육 28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전공학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경호경비관련 업체의 채용과정에서도 대졸자들이 전공실무자로서의 평가를 받거나 전공자로서 특별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고졸학력이나 학력 무관자와 거의 유사한 입장에서 채용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학력별 자격화<sup>1)</sup>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많은 젊은 인력들이 민간경비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대졸자들에 대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면제는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경비지도사의 선발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응시기준과 시험과목의 조정이다. 경비지도사의 중요성을 감안 한다면 경비지도사의 응시연령이나 시험의 응시자격을 다소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만18세 이상인 자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장의 지도·감독·교육요원으로 활동할 경우 한국의 정서상 지도·감독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도자로서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정연령 이상과 일정 학력이상자 또는 관련업무의 일정경력 이상자로 경비지도사의 응시기준이 다소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1) 이는 학력별로 자격등급을 나누어 민간경비요원의 자격을 차등화 함으로서 학력에 의한 민간경비의 전문성이 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즉, 각 분야별 민간경비 활동요원에 대해 1급, 2급, 3급의 자격등급을 학력에 따라 나누고,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해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그리고 경비지도사의 선발기준이 되는 시험과목의 조정이다. 현행 경비지도사 시험은 일반경비지도사의 경우 ①법학개론, ②민간경비론, ③경비업법, ④경호학·소방학·범죄학 중 택1로 되어 있고, 기계경비지도사도 동일하나 선택과목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비지도사 시험 교과목을 사회현실에 맞추어 ‘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탐정론’ ‘항공보안론(공항포함)’ ‘컴퓨터범죄’ ‘마약범죄’ ‘노상범죄’ ‘청소년범죄’ 등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학의 경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으로 세분화 하고 도로교통법의 추가적인 모색 등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경비의 선발 또는 채용과정에서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일반경비원의 경우 28시간, 특수경비의 경우 88시간, 청원경찰의 경우 7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민간경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2년간 또는 4년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민간경비원의 채용과 선발제도에 있어서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의 학력이 전문성으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굳이 대학을 선택할 필요 없이 단기적인 교육만 이수하면 민간경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인 전문교육을 외면하고 전문직종으로서의 사회적 정착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사항이다.

## 2. 민간경비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민간경비요원으로 분류되는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청원경찰 등에 대한 교육과정은 경비원이 종사하는 직무분야에 따라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이 각각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무교육을 제외한 교육과정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경비원의 경우 이론교육 7시간, 실무교육 18시간, 기타 3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특수경비나 청원경찰을 제외한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등 모든 경호 및 경비분야에서 민간경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민간경비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이러한 포괄성 있는 교육이 신입 민간경비원의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범죄의 예방 및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하는 민간경비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평범한 교육이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공통과목’과 ‘실무과목’으로 분류하여 본인의 지원 분야에 따라서 또는 위탁업체의 경비업종에 따라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재편되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청 지정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대상자는 시설경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또한 2006년 6월 경찰청 국

2) 2006년 경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대상자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인 72명이 시설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모두가 남자였으며, 연령대는 40-50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경비업 전체 허가업종 3,043업체 가운데 시설경비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923개로서 약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변보호 업체가 446개, 기계경비업체가 146개, 호송경비 51개, 특수경비 62개 업체 등으로 나타나 시설경비의 비중이 상대적 우위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일반경비원 교육과정은 경비업종에 상관없이 피상적인 개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문식 교육과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가 민간경비원 양성과정으로서 마련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정 기간 이상의 합숙훈련을 통한 실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면 민간경비요원의 자질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경비원의 경우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시력)과 형사처벌의 경력만 없다면 누구나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88시간만 이수 한 후 국가중요시설에 투입되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경비업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유사한 실무경험이 특수경비원 채용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는 있으나 현행 법적으로는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적 전문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에 있어서는 특수경비원으로서의 경력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신입교육을 받게 함으로서 과거의 학력이나 경력사항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도 이론교육 15시간, 실무교육 69시간, 기타 4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경비의 경우 업무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일반경비원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강의실 중심의 비합숙 교육이어서 현장실습의 기회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경비의 직무상 현장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일정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과목이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것도 특수경비의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 후 현장실무가 즉시 가능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방법이 아닌가 한다.

청원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경찰이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서 선발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이행하면서 경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경우는 별도의 선발과정을 통하지 않고 신체적 조건이나 형사처벌의 관련 사항만 없으면 개별적인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채용이후 청원경찰은 총 76시간의 기초교육을 받으면 청원경찰로서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비교적 짜임새 있는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서 대부분 합숙훈련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일반민간경비원에 비해 청원경찰직의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관련학과 교과과정에 청원경찰의 실무적 교육과정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청원경찰 기초교육 면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서 선발되는 경비지도사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 후 44시간의 교육

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 그러나 이수 교과목 중 이미 필기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습득된 ‘법학개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민간경비각론’ 등을 재교육함으로서 기초지식 습득에만 치중하고, 경비지도사로서의 실무적이며 효율적 교육은 사실상 등한 시 되고 있다.

따라서 경비지도요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조직 관리적인 지식과 안전관련 전문적인 지식의 교과목 편성이 재고되어야 한다. 즉, 조직관리론이나 리더쉽론, 인간관계론 등과 방재나 방화, 위기관리론, 응급처치 등 지도자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3. 민간경비 안전관리 능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안전관리에 대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사회범죄의 예방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위급상황 발생 시나 범죄의 진압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민간경비의 법적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민간경비요원의 대체능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위급상황은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나 또는 단시간 내의 구호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사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종의 사건·사고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연유 한다(박동균, 2004). 그러나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한 공경비의 조직적인 방어체제나 억제역할은 시간적·공간적 그리고 지리적인 물리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나 법적 대응조치의 개선을 통해 민간인으로서 대민 안전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경비요원들의 위급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경비 분야에서 위급상황의 관리 및 대응체제에 관한 사항은 경비업법에 근간하고 있지만 위급상황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민간경호경비는 통상 도급이라는 계약관계를 기초로 의무와 책임이 형성되므로 도급자와 수급자의 쌍방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급상황의 관리 및 대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질 수 있다(안성조, 2006; 공배완, 2007).

우선, 경비업법에서는 위급상황의 관리 및 대처에 대한 규정으로서는 구체적인 명시보다는 ‘경비업’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의 예방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경비업이라 함은 유·무형의 일체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련한 보안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위험발생의 방지업무, 운반 중의 현금이나 유가증권 및 귀중품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기에 의한 경비대상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sup>3)</sup>,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등 위험발생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의 관리업무를 주로 명시하고 있다.

3) 기계경비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법제8조). 또한 경비업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제7조).

그러나 민간경비원 성격의 특수경비원의 경우 위급상황에 대한 법적 권한과 대응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경비책임자(관할경찰서장)와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경비업법 제14조), 또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하여 진압할 수 있다(경비업법 제14조).

청원경찰의 경우도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원경찰 직무의 범위로서는,

- ①범죄의 예방과 진압,
- ②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 ③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 ④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⑤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으로 되어 있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으로서는,

- ①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②보호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③위험발생의 방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④범죄의 예방과 제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 ⑤경찰장구의 사용(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 ⑥분사기 등의 사용(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⑦무기의 사용(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등이 있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경우 위급상황의 발생 시 응급구조 및 사태의 진압, 범인의 체포 등의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급상황의 발생 시 현장진압 또는 위급상황의 대피명령이 필요한 일반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비원으로서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계경비업자에게는 오경보 방지의무와 위급상황 발생 시 25분 이내 즉시출동 등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나(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 현장출동 이후의 사항 즉, 범인의 검거나 체포, 진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분쟁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경호경비요원을 직접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는 경비지도사의 경우도 위급상

황의 발생 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소방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의무(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외에는 별도의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간경비의 경우 쌍방 간의 도급계약에 의한 위급상황의 관리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급상황의 발생 시 도급계약에 따라 법률적인 책임성 여부를 따지는 도급인과 경비업법의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경비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인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서는 일반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의 검증과정을 마련하거나 일정기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거치도록 한 다음, 청원경찰과 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위급상황의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법의 모색이다. 민간경비의 첨단장비와 민간경비요원의 안전서비스 활동이 위급상황 발생 시 투입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은 물론 사회안전에 대한 민·관 합동의 조직적인 구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위급상황에 또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민간경비요원의 활동 상 제도적인 권한 및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민간경비요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마련되고 선발과정에서의 자격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경찰의 보완적 관계로서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역할과 대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자로 한층 더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전문자격제도의 도입

‘자격’이란 일정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제도’는 전문분야에 대해 공식적으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경우 관련 산업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 교육체계의 마련 등은 발전하였지만 전문인으로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전문인력의 양성이 어렵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시설단체의 남발-무자격자의 양성-낮은 대우-높은 이직률-비효율적 경비서비스-사회적 인식저조-교육과정의 부실 등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비업법 제 11조 2항에 따라公安위원회는 경비업무의 적정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公安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또는 경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지식 및 능력에 관한 검정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정제도를 두고 있다(공배완, 2004). 경비원검정제도는 경비원 교육에 의한 성과를 측정하고 경비원으로서의 일정한 지식 및 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경비원의 노력을 더 한층 재촉하고 그로서 경비업무 실시의 적정함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민간자격증 관련 사항은 1997년 자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이외의 법인,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자격증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부터 각종의 민간

자격증이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약 1,000여종이 넘는 민간자격증이 쏟아지고 있어 민간자격증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2005) 민간자격증 광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간자격증이라고 밝히지 않을 뿐더러 광고주와 교재가격, 교재인도시기, 취업보장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고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민간자격증의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자격 기본법을 다시 보완 및 수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적과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한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격제도의 운용방법에 있어서는 일부 사설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의견 제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경비 자격증의 필요성 지적에 대해 ‘경호경비원 직무분석’이라는 연구 자료를 학계와 업체의 공동노력으로 발간하여 단계별 교육과정과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민간경비원 자격증 관련하여 별도의 연구나 실질적인 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비와 유관한 자격증으로는 ‘경비지도사’와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이 통용되고 있다.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서 199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고,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는 체계적인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와 ICU가 공동 주관하여 2002년부터 국가인정 민간자격증 성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보보호 발전을 선도해 온 KISA와 IT 관련 기술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ICU가 미래 정보사회 안전의 최후 보루가 될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SIS)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자격제도로써 현재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또한, ‘취약점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 분석 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정보보호 관련 국내 자격증이다<sup>4)</sup>.

민간경비원에 대한 자격증의 경우도 자격등급과 자격요건, 응시자격 등을 명문화하여 공신력 있는 학회나 협회의 사설기관에서 실시한다면 추후 국가자격증의 성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산·학·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동의 노력과 추진 기구의 지정을 통한 집중적인 연구와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4) 정보보호전문가 1, 2급에 대한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응시자격:

- a. 정보보호전문가 1급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정보보호전문가 2급 취득과 전산 관련직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전산 관련직무 3년 이상의 경력자 (※첨부1 참고)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정보보호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이수자
- b. 정보보호전문가 2급 : 응시자격 제한 없음

2. 시험과목:

- a. 필기: ①시스템 보안, ②네트워크 보안, ③어플리케이션 보안, ④정보보호론
- b. 실기: ①정보 보호 관련 단답형 문제, ②정보 보호 관련 서술형 문제, ③정보 보호 관련 실무형 문제

## 5.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

현재 경호경비관련 유일한 국가자격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비지도사’는 매년 일정 이상의 인원을 상대평가로 선발하여 민간경비원을 지도·교육·감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경비업체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경비지도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하여 한 때는 유망자격증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비지도사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어 수정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비지도사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①교육시설미비, ②전문강사 부족, ③재교육 제도의 부재, ④고령화 현상, ⑤범죄의 정보화 및 지능화에 대한 대비미흡, ⑥Total Security에 대한 교육부재, ⑦특수경비원제도에 대한 규정 미흡 등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완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이 많다. 현재 경비지도사의 시험은 1차 필수 2과목과, 2차 선택 2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과목나열에 대한 수평적 비중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목별 차지하는 수직적인 비중은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법학개론’의 경우 헌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등 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맞지 않는 너무 많은 잡다한 내용을 요구함으로써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시험과목이 ①경찰학개론, ②수사 I, ③영어, ④형법, ⑤형사소송법 등 5과목으로서 법학개론과 같은 잡다한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차 필기시험에 있어서도 일반경비지도사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경호학’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민간경비업무를 신변보호(Body-Guard)에 너무 국한시킴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신변보호를 비롯하여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원들은 치안과 방법, 방제, 방화, 호송 및 신변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험과목의 조정이 필요하다. 기계경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현실성 있는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경비지도사에 합격한 후에는 44시간의 교육을 이수 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이 중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으로서 이미 경비지도사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시간 때우기 식’의 요식행위로 취급될 뿐이다. 현장 실무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개발하여 일반 경비원들을 교육·지도·감독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직무교육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경비지도사는 전

문 관리자로서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자격증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경비지도사의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및 보완이 검토되어야 하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6. 민간경비의 전문 관리감독기관 신설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하여 허가사항과 업체의 관리·감독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타 경비업의 연구·육성·발전과 경비원의 교육에 관해서는 한국경비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기관의 경우 민간경비업에 관해서는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청원경찰에 관해서는 경비과에서 담당하는 이원적인 업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비업과 관련한 경찰기관(서울지방경찰청)의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을 보면, ①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수립, ②순찰지구대 외근업무의 기획 및 지도·교양, ③방법진단 및 심방에 관한 사항, ④산악구조대 운영지도, ⑤112순찰차 및 방법 싸이카 운영에 관한 사항, ⑥산불방지 협조업무, ⑦방법 홍보대책, ⑧방법초소운영 관리, ⑨순찰지구대 점검 및 지도·관리, ⑩경비업에 관한 사항, ⑪한강 범죄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무려 11가지의 업무를 5명 내외의 소수인원으로 감당을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민간경비 영역으로 간주되는 업무를 민간경비와 청원경찰로 분리하여 관리·감독 부서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비협회의 경우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회원의 품위보전과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 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한국경비협회 설립목적).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고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협회 직권의 강제성이 따르지 않으므로 해서 교육에 대한 부실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실질적인 구심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회원사의 공제사업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국경비협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외부에 비취지기도 한다.

민간경비에 대한 다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국가기관 내에 관리·감독청을 신설하거나, 또는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감독권을 위임하므로 민간경비에 대한 내실 있고 발전적인 운영이 요망되고 있다. 민간경비업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공적인 성격보다는 영리법인의 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회사의 운영방침이나 영리발생 기준에 따라 공공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경비의 특수적 상황을 국가 지원적 체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기구가 설립되어 민간경비의 포괄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IV. 결론 및 제언

취업·인사포털 사이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헤드헌터, 인사담당자, 연구원 등 직업 전문가 50명을 상대로 실시한 '2005년 10대 유망직업과 신종직업'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2위였던 정보보안전문가가 임금수준, 고용창출, 직업전문성 등 3가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844점, 3500점 만점 기준)를 받으므로 해서 '정보보안 전문가'가 올해의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뽑혔다. 이번 조사는 ▲임금수준 ▲안전성 ▲고용창출 ▲유연성 ▲직업 가치 ▲근무환경 ▲직업 전문성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된 조사였다. 한편 신종직업으로는 사이버경찰이 1위로 선정되었고, 실버시터도 3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지식산업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어 IT(정보통신), 건강, 인적자산 관리, 안전서비스 등 각 분야의 직업들이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어 새로운 전문직종으로서 부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인력의 양성은 제도적인 틀 속에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자격인증제도 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부여 될 수 있는 근무여건과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경비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수요에 적절한 공급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격검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에 적합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장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자격검증제도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기능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여과기능으로서 작용을 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의 각 전문분야에서는 이러한 전문자격인증제도가 도입·실시되어 긍정적인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민간경비가 도입 된지도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민간경비에 종사하는 인력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관련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 졸업자들의 사회적 진출로 민간경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과거에 비해 다소 향상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간경비 산업을 비롯하여 민간경비 영역의 질적인 성장한계는 제도적 미흡 또는 부재현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시장의 성장 및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의 답보적 사고는 시장의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민간경비의 제도적 정착이 부진해지고 있는 것이다. 장래의 유망직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수요나 사회적인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 민간경비가 더욱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또한 시장성에 적합한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연적인 태도로 주기적인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각종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생활의 안위를 위한 범죄예방 대책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과거의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범죄예방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찰방법활동의 강화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활동은 물론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관계 구축도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경비기구의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예방에 대한 개인적인 안전의식의 확립 및 안전장치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협조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등하교 길의 아동보호, 잠금장치 및 단속 시스템, 비상연락망, 가로등 설치, CCTV 설치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범죄예방 시스템 중의 하나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범죄의 예외지역은 없다.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특정기간,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시적인 감시활동이나 예방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공배완(2007), “국내대학 경호비서학과의 교육과정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호.

권정훈외(2007), “한국 경호경비학 연구분야의 성찰과 시사: 한국경호경비학회보 10년사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김순열(2000), “민간경비업체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호

백봉현(2002), 「한국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안황권외(2008), “한국 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기고논문(1997-2007)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이상철외(2004), “한국 민간경호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9호

이윤근(2002), “한국경비산업의 발전전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호.

이창무(2003), “한국과 미국의 민간경비 성장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호

임명순(2008),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1호.

Burstein Harvey(1994), 「Introduction to Security」, New Jersey: Prentice Hall

Charles A. Sennwald(2003), 「Effective Security Management」, MA: Burlington.

Fenelly Lawrence(1992), 「Security Applications in Industry and Institutions」, Butterworth: Heinemann

Gion Green(2008), 「Introduction to Security」, Oxford: Liancre House

# Memo

---

## Memo

---

## Memo

---

## Memo

---

## Memo

---

한국치안행정학회  
2009년도 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

2009년 6월 20일 인쇄

2009년 6월 26일 발행

---

발행인 : 배철효

발행처 : 한국치안행정학회

편집인 : 박동균

전화 : 053)819-1376 / 전송 : 053)819-1286

인쇄처 : 한솔기획인쇄

전화 : 053)422-1828 / 전송 : 053)423-1828

---